

제5권 제1호

2014

한국이민학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연구논문

스위스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체계

▮ 박명준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

ethnic enclave 확장 및 지속에 따른 질적 사례연구

▮ 김석호 · 하헌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통합

▮ 서영효



한국이민학

2014년 제5권 제1호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기관지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한다.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및 집필요강은 본지의 뒷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화: (063) 270-2917 팩스: (063) 270-2921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manet.org>

회원연회비

일반회원: 3만원
대학원생: 2만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221-253841-04-0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회 임원진

회 장 단

회 장	이철우 (연세대학교)	
차기회장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부 회 장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이진영 (인하대학교)
감 사	이충훈 (서강대학교)	이주연 (법무법인JP)

이 사

총무이사	송영훈 (통일연구원)	편집이사	설동훈 (전북대학교)
연구이사	이병하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이사	서정민 (연세대학교)
섭외이사	한건수 (강원대학교)	국제이사	Hans Shattle (연세대학교)

한국이민학

2014년 제5권 제1호

연구논문

스위스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체계 박명준	5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 ethnic enclave 확장 및 지속에 따른 질적 사례연구 김석호 · 하현주	2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통합 서영효	49

부록

한국이민학회 정관	81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89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93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95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101

편집위원

설동훈(위원장, 전북대) 김현미(연세대) 서정민(연세대) 윤홍식(인하대)
이규용(노동연구원) 이병하(서울시립대) 이승미(우석대) 이정환(청주대)
조현미(경북대) 최현(제주대) 최홍엽(조선대) 한건수(강원대)

편집간사

박순영(전북대) 고재훈(전북대) 이태훈(전북대)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5 No.1 2014

Contents

ARTICLES

-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tion Administration in Switzerland
 | Myung-Joon Park

 - Residential Segregation for Ethnic Korean Chinese in Korea:
A Qualitative Case Study after the Expansion and Continuance of Ethnic Enclaves
 | Hun-Joo Ha, and Seok-Ho Kim

 -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Networks and Social Incorporation in Korea:
A Qualitative Study
 | Young-Hyo Seo
-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연구논문

스위스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체계*

박명준**

스위스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체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을 가름하여 그로부터 한국의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체계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위스의 이민자 현황과 이민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후, 지역 수준에서 이민자 사회통합에 힘을 기울이려는 차원에서 구축한 지역 이민 행정을 ‘바젤모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스위스의 이민정책 및 행정체계는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면서 이민자의 관리와 통합을 주도해 가고 있는 점, 그리고 바젤모델에서 나타나듯 이민자들을 단순히 수동적인 통합대상으로 보지 않고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의 상호역동적인 변화를 통한 새로운 통합의 방식을 찾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스위스, 이민정책, 이민행정체계, 바젤모델

I. 서론

스위스는 중립국이자, 서유럽의 발전한 공업국으로 20세기 들어 주변국의 많은 주민이 이주를 선호하는 국가로 부상해 왔다. 주변국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큰 상황 속에서 매우 엄격한 이민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단 연방정부 수준에서 이민정책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집행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의 중심기관으로 연방이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BFM)을¹⁾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독특한 행정단위이자 주 정부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이른바 ‘칸

* 이 글의 집필을 위하여 자료수집 및 독일어 번역에 힘 기울여 조력해 준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과 김지현 씨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mjnpark@kli.re.kr.

1) 영어로는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FOM)으로 표기한다.

톤(Kanton)'이 중심이 되어 국가행정을 운영하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이며, 이를 반영하여 이민정책의 실행에서도 칸톤의 역할과 위상이 매우 발전해 있다는 사실이다. 또 내용상으로 스위스의 이민문제는 난민 문제와 특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이민정책을 구축하면서 그 안에 난민 정책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스위스의 이민정책과 이민행정체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가름하고, 그로부터 한국의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먼저 스위스로의 이민자들의 현황을 짚어 본 후, 그간 스위스로의 이민의 추세와 이민정책의 변화양상을 개관해 본다. 이어서 스위스 이민정책과 행정체계를 개관해 보면서 특히 그 전담기구인 BFM의 역할과 구성을 조명해 본 후, 이민자의 지역 수준에서의 사회통합에 힘을 기울이려는 차원에서 구축한 지역 이민 행정을 소위 '바젤모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스위스식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의 특성을 요약하고 그것의 한국적 함의를 찾아본다.

이 글의 집필을 위하여, 필자는 스위스 연방 이민청의 웹사이트와 이민청이 발간한 주요 자료들, 그리고 여타 학술연구 문헌 등의 문서자료를 참조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2011년 8월에 스위스 베른(Bern)에 있는 BFM을 방문, 해당 기관의 관계자 2인과 인터뷰를 수행하여 유용한 진술들을 수집, 분석하였다.²⁾

II. 이민자의 현황: 분포와 추세

1. 구성과 분포

BFM의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³⁾ 2013년 4월 현재 스위스 내 이민자는 약 2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공식집계된 정확한 이민자 수는 공식적으로 1,846,549명에 달하는데, 이는 스위스 전체인구(810만 명)의 약 23%에 해당한다. 이는 비율상으로 유럽 내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오늘날 스위스로의 이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총 52,781명의

2) 인터뷰는 사전에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의 취지와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기관 관계자가 그 내용을 토대로 대답을 준비한 후에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는 형식을 취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는 BFM의 Stefanie Allemann씨와 그녀의 상사였다.

3) BFM 2012년 이민 통계 (12월 말 기준). <http://www.bfm.admin.ch/content/dam/data/migration/statistik/auslaenderstatistik/2012/auslaenderstatistik-2012-12-d.pdf>.

이민자가 스위스로 들어왔으며, 대략 해마다 약 5만 명의 이민자가 스위스 안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중 약 2만 2천 명은 단기체류자이고, 일반 체류자는 약 3만에 달한다.

이민자들의 유입과 체류의 움직임이 가장 큰 칸톤은 취리히(Zürich)로, 2012년 기준으로 체류자 수가 약 35만 명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보(Vaud) 칸톤으로 약 23만 명, 제네바(Genf)가 약 16만 명, 아르가우(Aargau)가 약 14만 명, 그리고 베른(Bern)이 약 13만 명 등이다.

이민자의 출신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는 2012년 조사결과 이탈리아였다.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는 스위스 전체 이민자의 약 16.1%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는 독일(15.6%), 포르투갈(13.3%)의 순이다. 근래에 들어, EU와 체결한 ‘거주 이전 자유협정’(Freizügigkeitsabkommen)에 의해 EU 국가 이민자들이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의 유입은 아주 적은 정도의 증가만을 보인다.

스위스로의 이민 사유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2012년에 유입된 143,783명의 이민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할당제 없는 취업이민이 41.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이민이 31.6%, 직업교육 및 유학이 10.9%, 할당제 취업자가 8.0%, 미취업자 4.1% 등의 순서였다.

2. 추세

산업별 노동시장 내 이민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것은 스위스 전체 경제구조의 변화에 조용하여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호경기의 상황에서는 제조산업 부문에 약 3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했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약 46%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 것이었다. 이러한 규모는 2005년에 이르러 16만9천명(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20.4%)으로 줄어들었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호텔 관련업으로의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약간 증가했지만, 건축업에 종사하는 이민자 규모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2차 대전 이후 전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해왔던 분야에서, 근래에 들어 외국인의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경제의 성장 때문이다. 1970년대의 경우, ‘신용, 자산, 보험업종’(im Kredit-, Immobilien und Versicherungsgewerbe)에 약 18,000명 가량의 외국인들이 종사했다(전체의 2.7%). 그러던 것이 2005년의 통계를 보면, 약 133,000명(전체의 16.1%) 가량의 외국인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경제의 성장이 이민자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요한 원인임을 잘 보여준다.

경제구조의 변화는 이민자들 출신지의 다양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원래 스위스가

주요하게 이민자들을 수입한 국가들(Rekrutierungsländer)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구)유고슬라비아 등으로부터의 유입은 근래에 들어 꾸준히 줄어들었다. 반면, 유럽 내 양자 간 협약들(Bilaterale Verträge)의 실행으로 독일, 포르투갈 등으로부터의 이민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이 가운데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 특히 서비스 경제 분야에서 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며, 반면 포르투갈인들은 저소득 분야에 많이 종사하는 편이다.

한편, 스위스로의 이민에 있어서, 망명 신청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13년에 발표한, 2012년 현재 망명 현황에 대한 스위스 이민청의 공식 통계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약 15,000명 가량이 스위스로 망명을 신청했다. 그 수는 2011년에 22,000여 명, 2012년에 28,631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 현재 스위스로의 망명 신청자들의 출신국 중 가장 다수의 신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Eritrea)로, 이들은 전체 망명 신청자들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Ⅲ. 이민과 이민정책의 역사

스위스의 이민정책 역사는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제노포비아: xenophobia)의 경향 혹은 ‘이방화에 대한 공포’(Überfremdungsangst)의 사회적 정서와 끊임없이 대결하고 싸워 온 가운데 형성되고 변동되어 온 역사이다. 그러던 것이 유럽연합과의 거주지 이전 자유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민자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기준선을 더욱 분명하게 정리하게 되었고,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기틀을 잡아 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스위스로의 이민 및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구축된 이민정책의 역사를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19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이민자의 유입과 강력한 억제정책

스위스는 원래 실업과 인구증가의 압력에 따라 가난한 소작농들이 북서 아메리카나 호주, 그리고 러시아 등으로 이주를 하던 시대에 이민자 수출국으로 존재했다. 그러다 19세기에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점차 이민자 수입국으로 자신의 위상을 전

환했다. 기록상 1880년부터 해외로 간 스위스 이민자보다 스위스 내로 유입된 이민자의 수가 더 커지게 되었다. 당시 외국인들이 스위스로의 이민을 선호했던 이유는 다른 외국과 비교해 노사관계 측면에서 매력적이었고, 완전한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1874년, 당시 헌법에 따라 스위스는 주 정부인 칸톤(Kanton)과 지방정부인 게마인데(Gemeinde)로 하여금 이민자를 수용하고 관리하게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는 스위스 이민 행정의 현대적 성립에 있어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만 해도 그 정도 선에서 이민자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유지 가능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그 초기부터 스위스로의 이민자들의 유입은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1914년 무렵 스위스로 이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60만 명에 이르렀다. 이는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였는데, 그러자 스위스 사회는 이른바 ‘이방화의 공포’(Überfremdungsangst)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러자 스위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1925년 무렵부터 스위스 정부는 이민자들의 과도유입으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외국인 정책, 노동시장 정책, 난민 정책 등의 수단을 써서 극복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민을 심하게 제한해 갔다.

독일의 나치가 유럽을 지배하던 시절에 스위스는 외국인들이 스위스를 경유국으로 거쳐 가는 것만 허락했다. 심지어 국경에서 스위스로의 입국을 시도하던 수천 명의 유대인 난민을 끝 가지 받지 않고 거절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 2차 세계대전 중 스위스 내의 이민자 규모는 인구의 5%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져 역사상 최저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 이민 행정의 시작은 중앙집권적이지 않고 지방정부 중심이었다. 1884년 헌법에 따라 각 주와 지방정부에 갖춰진 ‘외국인 담당 경찰’(Fremdenpolizei)에 여행 및 체류허가와 망명관리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도가 높았던 이 시기에 이민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스위스는 이민정책을 중앙정부(Bund)에서 관여하기 시작했다. 1917년 이민자의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에 경각심을 지니면서, 스위스 정부는 의회에서 긴급조정을 받아 ‘외국인 담당 중앙경찰청’(Zentralstelle der Fremdenpolizei)을 통하여 엄격한 국경감찰을 맡도록 했다. 동시에 외국인정책, 노동시장 및 난민정책을 중앙집권적으로 떠나가기 시작했다. 1931년 인권에 대한 책임과 스위스의 경제 이득을 목적으로 내 세우면서, 이른바 ‘외국인의 체류와 정주에 관한 연방법안’(Bundesgesetz über Aufenthalt und Niederlassung der Ausländer: ANAG)을 도입했다.

2. 1945-1960년대: 외국인력 유입 급증, 정책 미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위스로의 이민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1970년대에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난을 겪고 경제 회복 후 여론 악화에 따라 국가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등의 경험을 거치면서, 사실상 199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스위스는 이민자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관대한 정책을 펴 갔다.

일단 전쟁 후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웃국들로부터의 인력수입이 불가피해졌다. 그 목적으로 예컨대, 1948년에는 이탈리아와 이른바 ‘채용협약(Rekrutierungsabkommen)’을 체결하여 이탈리아로부터 스위스로의 인력수입의 길을 열었다. 수입된 인력들은 농업, 제조업, 건축업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 관련 업무 등에 주로 종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위스에서의 노동력의 수요는 급증했다. 그 결과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스위스는 수입된 인력들을 맞이하는 체계적인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민정책에 대한 장기적 안목도 없이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수입 이민자들의 스위스 내에서의 정착은 제도적으로는 금지되었다. 당시에도 외국인 노동력을 여전히 부분적이고 유동적인 존재로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경제성장 속에서 고용은 증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외국인력의 가족들까지도 스위스로의 이민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이민자 비율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미흡한 제도와 괴리 상황을 겪게 되었다. 이는 내국인들과 이민자들 모두로부터 강한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이민정책을 국내 정치의 주요한 주제로 급부상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1년 스위스 정부는 학자들과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인 이른바, ‘외국노동력문제에 관한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on the Problem of Foreign Labour: ECPFL)를 구축,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Cerutti, 2005; Niederberger, 2004, 2005; Efnay, Niederberger and Wanner, 2005). 이 위원회는 당시까지 이민에 대한 공적 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실했음을 지적하면서, 자유 허가 정책(liberal admission policy)과 값싼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고용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기구를 현대화해서 미숙련 노동자의 비율을 줄이고, 생산을 합리화하여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스위스 경제구조 전체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Afonso, 2007:

12). 더불어 1960년대에 스위스 정부는 이른바 ‘로테이션 정책’(Rotationspolitik)을 펴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고, 그것의 자동적인 연장을 불가능하게 하되, 동시에 그들의 재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1960년대 이루어진 개혁은 사실상 실패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기업의 현대화 과정이 그렇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여전히 미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넓게 존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정부 차원의 규제정책 수준에서만 개입이 이루어지는 개혁이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당시 도입된 할당(Quote)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을 매우 심하게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이동을 허락하지 않았고, 초기 체류 기간에는 거주지 이전도 제한했다. 미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취약한 경제 분야에는 칸톤의 관료들이 직접 나서서 노동력 공급에 간여했는데, 결국 연방정부, 주 정부와 고용주 사이에 일종의 조합주의(코포라티즘)적인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노동력의 유입제한정책을 발본적으로 개혁하려 했던 애초의 의도로부터 많이 벗어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3. 1970-1990년대: 선별적 제한정책의 미온적 실행

외국인력의 유입은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였다. 1970년에 접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나면서 인력수입은 잠시 감소했다가, 70년 말에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전후로 계속 증가해 갔다. 당시 스위스의 주된 인력수입국은 이탈리아보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으로 옮겨 가 있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주노동자(Gastarbeiter)가 꾸준한 증가해 가자, 이른바 이방화(Überfremdung)에 의한 강한 반발여론이 퍼졌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더 경각심을 가진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경제와 사회 현상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민자와 그에 따른 이방화의 공포(Überfremdungsangst)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우파 정치인인 제임스 슈바르첸바흐(James Schwarzenbach)는 1970년에 이방화의 공포를 제어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당시 스위스 정부가 제한적이거나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위

‘슈바르첸바흐-방안(Schwarzenbach-initiative)으로 불렸다. 이 방안은 56%의 작은 차이로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이미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어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였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와 고위 관료들은 모두 효율적인 이민정책을 비판하며, 그것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경제 내에서 이민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Afonso, 2007: 21).

당시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책이 미숙련 노동자를 제한하려는 정책을 펴면서, 숙련노동자나 전문가들의 유입까지도 제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즉, 경제적 생산성이 적은 부분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외국인의 전문적 인력 유치를 어렵게 해, 결국 스위스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 의견이었다. 그러한 사고에 따라, 스위스가 미숙련 인력을 주로 수입한 지역인 유고슬라비아, 터키,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만 특별히 겨냥하여 이민자의 유입을 제한시키면서, 연 단위 기간제 체류자(Jahresaufenthalter)와 계절 노동자(Saisonniers)를 칸톤 별로 할당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도 했다.

4. 1990-2000년대: 이민억제정책과 이민자 통합정책 동시 추진

선별적 제한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 이르러 스위스로의 이민자의 규모는 전체인구의 약 20%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아랍혁명이 발생하는 등 국제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스위스로의 망명 신청자와 망명자의 수도 계속 증가해 갔다. 그러한 속에서 스위스의 이민정책은 본격적으로 이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선화하였고, 망명자들에 대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갔다.

1980년대 말부터 구축된 이민정책의 새로운 개혁 방향은, 스위스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위상이 높은 나라들(특히 당시 EU-15국)에 문을 열어 고급 외국 노동력을 전문성과 생산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활성화하고, 통합이 어려운 문화권의 미숙련 노동자의 유입은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고 속에서 스위스는 2000년에 EU와 거주지 이전의 자유에 대한 협정을 맺고, 더블린(Dublin)협정, 쉐앙(Schengen)조약 등을 체결하는 등, 주변국과의 문호를 개방하는 외교적 정책을 폈다. 그와 맞물려, EU/EFTA 국가 이민자에게는 유입의 제약을 없애고, 나머지 국가 이민자에게는 오직 전문가나 숙련노동자만 허가하는 제한을 두는 정책을 실행해 갔다. 결론적으로 EU/EFTA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주로 그 나라들의 전문직 혹은 준 전문직들의 이민만을 허용하는 쪽

으로, 그리고 비유럽 국가들로부터는 오로지 전문직만 이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였다. 스위스는 애초에 소위 ‘3씨클(3-circles) 정책’을 통해 문화적 친밀도로 나라를 구분해 이해하는 정책을 마련했었다.⁴⁾ 그러던 것이 결국 ‘두 씨클(2-circles)정책’, 즉 EU/EFTA국가인지 아닌지로만 구분하는 정책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정책은 2013년 ‘벤틸조항’(Ventilklausel)의 시행으로 더욱 심화되어 갔다. 그에 따라, 북유럽EU-8국과 EU-17국 출신 이민자들의 경우, 5년의 체류가 보장되는 체류허가B를 신청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즉 한 해에 해당 범주에 주어진 일정한 정원(Quote)을 부여하여 EU-8국은 2,180명, EU-17국은 53,700명까지 가능케 했다. 만일 그 해에 이러한 정원이 다 차면 나머지 신청자는 그 다음 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기존에 체류허가B와 1년 이하 체류 가능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체류허가L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게 하였으며, 그들의 가족동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한편, EU-17국 이민자들이 체류허가B를 연장하고자 할 시에는, 5년의 기한을 추가로 연장받는 체류허가B보다는 무기한 지속 체류가 가능한 체류허가C, 즉 정주허가(Niederlassungsbewilligung)로 바꾸는 것을 오히려 권장토록 했다. EU-8국 이민자들에게는 이러한 권고 조치가 해당하지 않아, 그들이 체류를 연장할 당시에 만일 정원이 다 차 있으면 단기체류L로 우선 연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은 EU국가 내에서도 차등적으로 제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민정책에서 2씨클(2-circles) 방안이 심화하여 감을 시사한다. 즉, EU-17로부터의 외국인들에게는 자유롭게 문호를 열되, 위상이 낮은 북유럽 국가에는 제한을 두는 것이다. 또 체류허가L을 소지할 경우 스위스 내에서 주택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하는 등 정착에 여러 어려움을 유발하여, 그들의 이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도모했다.

애초에 스위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저지하려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정착과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는 위와 같은 억제정책에 더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 별도로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특히 1999년 바젤(Basel) 칸톤에서 시행한 통합정책이 하나의 모델이 되었는데, 이는 이후 ‘바젤모델(Basler Modell)’로 칭하여졌다. 이 통합정책은 사회적 의미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미숙련 노동이 필요한 부분에 그들을 교육하고 배치함으로써 단기적이고 유연성 있는 미숙련 노동을 더욱더

4)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위상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 있었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을 발전시키면서 이들의 수용과 귀환을 원활케 하여 정책적 안정을 찾아 나가기도 했다.

5. 2010년대: 더욱 강화된 이민억제정책 도입 - EU와 정면 충돌⁵⁾

지난 2014년 초 스위스는 유럽연합(EU) 시민의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투표는 2014년 2월 9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엄격한 쿼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법안이 50.34%의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다. 이러한 이민제한법을 발의한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chweizerische Volkspartei: SVP)은 그간 “이민자 증가는 일자리, 주택,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적 재앙”이라며, “스위스 스스로 이민자의 수와 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연간 4만 명의 이민자들의 유입을 수용 가능한 상한선이라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로써 스위스는 5억 명의 EU 시민과 810만 명의 스위스 국민이 같은 조건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EU와 맺은 협정을 3년 안에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EU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이민자들에게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것과 달리, 사실상 ‘반(anti)이민 정책’을 택한 것이라, 향후 EU와 스위스 간의 외교적 논란을 예고하는 선택이었다. 스위스 국민투표의 결과가 나오자 EU 집행위원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어, “이민자를 제한하는 규제안은 EU와 스위스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⁶⁾ 로슈, UBS, 네슬레 등 스위스 기반 다국적 기업들도 이민제한법안에 대해 “경제적 고립과 국가 신뢰도의 하락을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IV. 연방이민청과 이민행정

이 절에서는 스위스의 이민행정 체계에 대해서 이민행정의 주무 기관인 BFM을

5) 이 절의 내용은 donga.com 2014년 2월 11일 자 기사, “스위스 이민제한법 국민투표 통과”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40211/60733491/1>

6) EU 집행위원회의 비비안 레딩 부위원장은 “노동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현재 43만 명의 스위스인이 EU에서 살고 있듯이, 양측에 혜택을 주는 7개 협정의 일부”라며 “스위스가 선택적으로 협정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경고해 왔다(《동아일보》, 2014.2.11).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단 이민정책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개관하고, 이어서 연방이민청의 이모저모를 기술해 본 후에, 전체적인 이민 행정의 협력적 집행양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이민정책의 주요 개념: 정의와 제도적 기반⁷⁾

스위스에서 이민정책이라고 칭하여지는 정책영역의 핵심적인 내용적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그것은 각각 ‘노동력의 유입’, ‘난민의 보호’, 그리고 ‘유입된 노동력에 대한 융화 활동 지원’ 등이다.

첫 번째 목표와 주제는 유연한 노동력 유입정책을 통하여 국가의 안녕 및 복지 증진을 꾀하는 것이다. 스위스는 이미 음식·숙박·유흥업, 건축업, 관광업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까지 외국인 노동 인력이 중요한 경제요소이다.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경제의 실질적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스위스라고 하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민정책을 유연하고도 적절하게 실행하는 것은 경제정책 일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스위스는 이민정책의 하나로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을 편다. 오랜 인도주의적 전통에 부합하여 전쟁, 핍박, 고문 등을 피하여 온 이방인들에게 원칙적으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스위스를 떠나야 하며, 그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것도 이민정책의 한 영역에 속한다.

셋째, 이민자의 스위스 현지사회로의 융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정책의 중요한 범주이다. 범죄율의 증가,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의 발생, 사회적 불안정의 확산 등의 중요한 원인에는 이민자들의 스위스 사회로의 통합과 융화의 실패가 존재한다. 스위스 정부는 이민자들의 통합 또는 융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특히 무료언어 연수 등—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2. 연방이민청: 역할과 구성

오늘날 스위스 이민 행정의 핵심기관은 BFM이다. BFM 안내서에 따르면, 이 기관은 자신의 과업을 “누군가 어떤 조건으로 스위스에 입국할 것인지, 어떠한 노동

7) BFM의 웹사이트 <http://www.bfm.admin.ch>.

을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 것, 그리고 누가 스위스에 들어와 자신의 나라에서 겪는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BFM, 2012; FOM, 2012). 나아가 BFM은 이민정책의 실행과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 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간에 협력적 노력이 전개되도록 지원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귀화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또 해외로의 이민을 원하는 자국민들에게 “이민정책의 모든 관점에서 필요한 조언을 제공해 주며, 출신국가, 경유국가, 그리고 다른 목적지 나라들에서 제기되는 국제적 차원의 질의, 응답에 대해 국제기구와 함께 활발하게 간여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닌 BFM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절에서는 역사, 역할 그리고 구조의 측면에서 BFM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역사

BFM의 출범은 2005년이지만, 이 기관은 과거의 여러 기관을 자신의 모태로 삼고 있다. 그것은 외국인경찰청, 외국인업무처, 연방난민청, 연방이민·통합·재외동포청 등으로 불려오다가 연방이민청(BFM)으로 탈바꿈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오랫동안 ‘외국인경찰청’(Zentralstelle der Fremdenpolizei)은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이민정책 주무 기관이었다. 1979년에 이르러 외국인경찰청은 ‘외국인업무처’(Bundesamt für Ausländerfragen: BfA)로 개칭되었고, 그러면서 업무 구조에 일정하게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BfA는 더 이상 경찰 업무를 맡지 않았다.

한편, 1985년에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엘리자베스 코프(Elisabeth Kopp)의 주도하에 최초로 망명 관련 제도를 전담하는 국회의원 의석이 생겼다. 이 국회의원은 ‘법무·경찰부’(Eidgenössisches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EJPD)의 직속으로 규정되었다. 외국인업무처(BfA)는 1990년 망명법의 규정에 따라 난민제도를 위한 기관인 ‘연방난민청’(Bundesamt für Flüchtlinge: BFF)으로 전환되어 망명과 난민 분야 업무를 전담하였다.

2003년에 이르러 BfA는 ‘연방이민·통합·재외동포청’(Bundesamtes für Zuwanderung, Integration und Auswanderung: IMES)으로 한 차례 더 변화를 겪으며, 더욱 폭넓은 업무 영역과 구조변화를 겪었다. IMES는 체류승인 규정과 취업희망 외국인에 적정한 역할부여, 그리고 그들의 귀화 및 통합지원 등의 업무에 책임을 졌다.

마침내 2005년 1월 1일 BFF와 IMES가 합병이 되어 BFM이 출범하였다.⁸⁾ 두 기

8) 당시 통합을 주도했던 인물은 크리스토프 블로허(Christoph Blocher)였다.

관의 통합을 통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이민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도모했다. 이 합병은 일종의 이중적 업무를 없애고 행정적 소모를 줄이려는 시도였다. BFM은 4가지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각각 ① 입국, 체류, 귀환, ② 직업활동권, 이주권 및 해외이민, ③ 귀화(시민권)와 통합, ④ 망명 절차 등이다. 각각의 업무 분야들은 지시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지원되도록 했다. 이후 2010년에 BFM은 기관의 업무 진행을 보다 신속하게 하려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새로 단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공식적인 목적과 기능

BFM의 법적 기반은 공식적으로 1999년 11월 17일에 제정된 스위스 연방 ‘법무·경찰청’(Eidgenössisches Justiz- und Polizeidepartement: EJPD)에 관한 규정에 마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BFM은 “외국인의 스위스로의 이민과 자국민의 해외이민, 외국인법과 망명법(스위스 시민권 등)을 다루는 연방정부의 전문기관”으로 정의된다. 그러면서 BFM은 명시적으로 다음 세 가지 목적 또는 기능을 갖는다(EJPD 제12조).

- ① 외국인 정책의 일관된 추진
- ② 연방의회의 결정에 부합한 난민정책의 집행
- ③ 체류 외국인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동반한 사회발전의 조건 마련

각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 정책의 일관된 집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BFM은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그 하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실현함으로써, 또한 인도적 사유에서 가족의 결합에 대한 고려 안에서,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 경제의 이익과 장기간의 직업적 및 사회적 통합의 기회(스위스의 학문적 문화적 필요 등에서와 같은)를 참작한 외국인 노동력의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난민정책의 실현과 관련하여, BFM은 ‘특별히 일관된 망명자 수용정책과 귀환정책의 보장’을 추구한다. 셋째,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해 BFM은 ‘스위스 거주 외국인들의 조직체와 연계하여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유익한 조건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 구체적인 활동내용

외국인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BFM은 외국인 영역 및 스위스 시민권 영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한다. 그것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스위스 외무부 및 유관 다른 부처와 함께 비자 정책의 기초를 형성하여, 외국인법의 영역에서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고 실행한다. 둘째, ‘경제·교육·연구부’(Eidgenössisches Departement für Wirtschaft, Bildung und Forschung: WBF)와 협력하여, 외국인정책이 지니는 스위스 국민경제의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작업에 간여한다. 셋째, 외국인 법의 기준들을 실행하면서, 특히 국경을 넘는 행위(월경)에 대해 외국인의 체류법적 통제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지역에서—이를테면, 주 정부(칸톤)와 지방정부(게마인데)에서—외국인법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다섯째, 스위스 시민권에 대한 일체의 질문들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BFM은 난민정책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몇 가지 역할들을 수행한다. 첫째, 망명의 승인이나 거절에 대해, 혹은 임시적 승인 (스위스로부터 다른 목적지를 찾도록 하는 것)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 둘째,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즉 지역과 스위스 국내의 기구들과 함께, 나아가 국제기구와도 함께, 망명에 대한 주요한 문제들을 조정한다. 셋째, 외무부의 승인을 받고 국제 난민정책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난민정책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추진한다. 넷째, 구금, 보호 또한 행정의 재정조달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합당한 보조금을 조달하고, 그것의 사용을 감독한다. 다섯째, 외무부와의 협력으로 귀환정책(Rückkehrpolitik)을 마련하고, 귀환과 재입국 시 조력을 제공하며, 지방정부의 귀환원조 프로젝트와 공익적 고용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조달을 지원한다. 여섯째, 지역에서 스위스로부터 다른 목적지를 찾도록 하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한편, BFM은 외무부와 함께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이민발전을 분석하고 국가 의회의 이민정책에 대한 결정기반을 마련한다. BFM은 특히 그와 관련하여 특별과제와 특별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앞서 언급한 규정 제13조와 14조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일단 BFM이 수행하는 특별과제는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주권과 정착과 관련한 시민법적 조약의 위반 시에 의회에 의견을 개진한다. 둘째, 귀환(Rückübernahme) 및 경유(이민 파트너십 같은) 등의 이슈들에 대해 외무부와 함께 해당국과의 국가조약 협약안에서 준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⁹⁾ 셋째, 망명객, 서류부재자, 무국적자들을 위한 신분증을 발행한다. 넷째, 이민에 관심

9) Fassung gemäss Ziff. I 3 der V vom 8. Nov. 2006 über die Änd. von V im Zusammenhang mit der teilweisen Inkraftsetzung der Änd. vom 16. Dez. 2005 des AsylG sowie des KVG und des BG über die AHV, in Kraft seit 1. Jan. 2007 (AS 2006 4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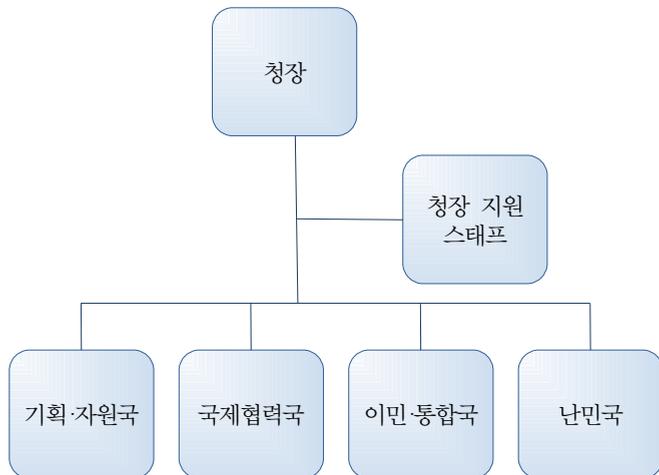
있는 사람들과 연수생의 중계를 위해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관리한다. 다음으로 BFM은 3가지 측면에서 특별권한을 갖는다. 첫째, 스위스 시민권에 대한 모든 업무의 독자적인 수행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 둘째, 외국인법과 민법의 영역에서, 지역의 최종심급 결정에 반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¹⁰⁾ 셋째, 무국적자의 인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4) 조직구조

BFM의 내부 조직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이 기관의 목적과 역할의 내용을 그 안에 반영하고 있다. BFM의 구조에는 BFM의 수행하는 업무들이 담겨 있다. 청장 관할 하에 크게 네 국이 존재하는데(그림 1), 그중에서 핵심 업무는 세 부서에서 수행하고, ‘기획·자원국’(Planning and Resources)에서는 인사·재정·전산 등 BFM의 행정체계 전반을 관할한다.

스위스는 망명과 귀환에 대한 관리 업무를 늘리면서,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을 신설하였다. 연방이민청은 내적으로 커다란 구조조정을 감행했는데, 그것은 난민정책과 이민 거버넌스 내의 국제협력 역할을 확대하는 개혁이 있었다. ‘국제협력국’에서는 핵심 부서의 세 영역 중 하나로 주로 귀환업무를 담당한다. 귀환자들의 본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몇 가지의 내부부서로 구획한다.

〈그림 1〉 BFM의 조직도



자료: FOM (2012: 45).

10) Fassung gemäss Ziff. II 10 der V vom 8. Nov. 2006 über die Anpassung von Bundesratsverordnungen an die Totalrevision der Bundesrechtspflege, in Kraft seit 1. Jan. 2007 (AS 2006 4705).

BFM 활동의 가장 중요한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통합국’(Immigration and Integration)은 가장 규모가 크고 업무도 세분되어 있다. ‘이주·통합국’에는 업무 영역에 맞추어 크게 5개의 하위부서들이 존재하는데, 입국과(Einreise), 체류허가과(Zulassung Aufenthalt), 취업허가과(Zulassung Arbeitsmarkt), 통합과(Integration), 국적과(Buergerrecht) 등이다. 입국과에서는 비자발급과 관련한 기초업무, 입국자의 정보에 대한 확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체류허가과에서는 여행증명서를 수합하고, 특히 스위스의 지역별로 구분하여 처리하며, 스위스 내 독일계 주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둔다. 통합과에서는 통합정책의 개발과 통합정책수단의 집행을 담당한다. 그리고 국적과에서는 스위스인으로서의 귀화의 문제를 담당한다.

끝으로 ‘난민국’(Asylum and Return)에서는 망명 절차와 관련한 엄정한 판정과 실행을 도모한다. 특히 더블린에 분소를 따로 두어 유럽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난민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모색하고 있다.

3. 이민행정의 협력적 집행

스위스 이민 행정조직의 핵심은 연방이민청이지만, 그렇다고 연방이민청이 모든 것을 독점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연방정부 내의 여러 행정기관이 각자의 부서별 특성에 맞추어 일정하게 이민정책의 영역에 간여하고 협력과 조율을 이루어 간다. 다양한 이주정책의 과제들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수단들은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 예컨대 부처협약과 부처 간 업무그룹들은 다양한 의무를 통해 이해의 충돌을 이른바 ‘정부의 전체성에 기반을 둔 접근’(Whole-of-government Approaches)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IMZ-위원회’(Committee of the 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igration: IMZ Committee)라는 형태의 이민정책 관련 부처 간 협력의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 명료, 배태(Einbettung)의 원칙을 지향한다. 가장 중요한 전략적 협력의 자리는 이민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협력그룹 본회의이다. 여기에서 통합정책의 우선순위 및 스위스의 이민외교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을 정의한다.

협력은 스위스 정부를 넘어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로 확대되어 있다. 먼저, IAM-플레눔(Plenum of the 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on Migration: IAM

Plenum)은 1년에 2번 회의를 갖는다. 국제이주협력의 부처 간 협력 회의에서는 IAM-플레늄(IAM-Plenum)의 실효성 있는 계획을 조정하고 그것을 실현시킨다. 실효성 있는 협의회로서 IMZ-위원회는 1년에 6번에서 8번 만난다. 업무그룹들은 지역, 주 혹은 주제별 필요에 따라 형성된다. 어떤 부처가 위원장을 맡을지는 IMZ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민정책의 구축과 실행에 있어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스위스는 국제적 이주회담(Migrationsdialog)의 틀 안에서 다양한 국제기구와 함께 한다. 즉,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GFMD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또는 베른-이니셔티브(Berner Initiative) 등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차원을 아우르며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이주경영에의 기여를 도모한다. 그 연장에서 스위스는 지역적 이주 담화, 예를 들면 라뻏-프로세스(Rabat-Prozess)나 부다페스트-프로세스(Budapest-Prozess)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한다. 끝으로 비정부기구들과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진행하는데, 특히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자원을 정부가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NGO와의 협력의 증진을 통한 모색은 특히 필요하다.

V. 지역 수준의 이민행정: ‘바젤모델’ 사례

연방국가라는 스위스 행정구조의 특성상 중앙의 BFM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내용보다 난민 문제 및 이민 관련 법률의 제정, 난민의 허가와 관련 절차, 이민자/난민에 관한 국경에서의 국제협력 등에 주력한다. 대신 이민자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회통합 정책의 실행은 지방의 행정단위인 칸톤(Kanton)이나 시(Stadt)에서 주관해 간다. 즉, 이민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이주 생활의 시작부터 사회통합까지의 모든 과정—는 지방 행정의 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또 파악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스위스의 바젤 시 칸톤(Basel Stadt Kanton)의 사례에 초점을 두고, 지역에서의 이민 행정의 체계가 어떻게 짜여 있고, 이민정책의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면모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¹¹⁾ 이른바 ‘바젤모델’로 불리는 바젤 칸톤의 시도는 단순히 지방 행정의 운영방식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

라, 내용과 관점 상에 있어서 독특한 혁신적인 면모를 지닌 것이어서 더욱 시선을 끈다. 이어서 바젤모델의 원리와 특성을 개관해 보고, 그것의 발전 및 실행양상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정책의 원리와 기본특성

바젤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일정한 지도원리(Leitidee)를 그 안에 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1999년 인류학자 레베카 에렛(Rebekka Ehret)이 연구를 통하여 구축한 것으로, 크게 3가지의 핵심사고(Leitgedanken)로 요약된다(Ehret, 1999). 첫째는 이민자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Nutzen des Potentials)이다. 둘째는 이민자의 통합은 사회와 도시 전체의 절실한 문제라는 것(Integration als gesamtgesellschaftliches und gesamtstädtisches Anliegen)이다. 셋째는 차이를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다루어 가야 한다는 것(Bewusster Umgang mit Differenz)이다.

이러한 사고는 지난 1970년대부터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아 온 통합정책의 원리인, 이른바 ‘결여 중심적 접근(Defizitäransatz)’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었다. 기존의 결여 중심적 접근에서는 이민자들을 자신을 희생하면서 본국 주민들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사고를 담고 있다. 하지만, 에렛(Ehret, 1999)의 결여 중심적 접근은 사회적 및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만 남겼을 뿐이며, 실지로 이민자들의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실패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대신에 그녀는 이민자의 가능성과 그들의 자원을 긍정적으로 끌어내고 동원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을 끌어내는 이른바 ‘잠재 심적 접근(Potenzialansatz)’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 통합을 요구할(fodern) 뿐 아니라, 그들을 촉진하는(fördern) 지향을 함께 담는 것이다. 바젤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이렇게 혁신적인 사고를 체화한 원리를 담아 구현한 것이었다.

바젤모델의 기반이 된 이러한 에렛의 이론은 해방적 인간상과 사회상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그것은 모든 사회적 경계들이 없어지는, 철저한 개인의 존중을 바탕으로, 매우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끌어내는 것을 지향했다. 거기에는 민족들의 다양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최대한 그러한 차이들을 긍정적인 방향

11) 바젤 주를 사례로 택한 이유는 이곳의 이민 행정체계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 다른 주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가장 주도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바젤모델은 유럽 내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다.

으로 끌어안고 발전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러한 사고하에서 이민자 통합은 단순히 ‘특별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보편적인 ‘사회 불평등’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에렛(Ehret, 1999)은 ‘이민자 문제’를 쌍방, 즉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정의했다.

이렇게 구축된 바젤모델은 내용으로 두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을 지닌다. 첫째, 그것은 단순히 단기 이민자 문제 해결만을 위한 일종의 ‘특별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장기적인 이주와 통합을 지향하는 전망을 담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젤 주 내의 주민 및 도시발전계획에서부터 이민통합정책 계획을 넣어서 시작했다. 이주민 통합정책이라는 것을 한쪽에서 다른 쪽을 흡수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호 간의 변화를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장기적이고 폭넓은 통합정책을 계획하고 실행시켜 가고자 했다.

둘째, 바젤 칸톤의 이러한 ‘통합’계획은 말 그대로 능동적·발전적 의미의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칸톤과 게마인데라고 하는 지방 수준의 행정단위가 갖는 특성상 실제로 통합 과정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참여적으로 끌어내고자 했다. 주민과 비정부단체 및 기구의 참여를 더욱 북돋우고 장려했다.

2. 바젤모델의 발전과 실행

1) 행위영역과 표적 집단

1999년 당시 통합정책의 5가지 조치영역을 구획했다. 그것은 교육, 노동, 주택개발, 정보, 그리고 참여 등이다. 통합정책을 이 영역들에서 특별히 더 주안점을 두고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었다. 각 영역에서 수립한 목표는 이후 10여 년 동안 대부분 달성되었고, 그 사이에 이들은 13가지로 보다 세분되고 확장되었다. 그것은 조기축진과 학교 교육, 직업 및 성인교육, 경제활동(영리 노동), 주택개발, 공존장 활동, 건강, 질병 예방, 스포츠 및 여가, 종교, 고령자, 차별로부터의 보호, 정보, 그리고 참여 등이다.

이러한 활동영역의 설정에 더하여, 바젤의 이주민 통합정책에서는 특별히 통합이 촉진되어야 할 표적 집단(Zielgruppe)을 설정하였다. 이는 통합의 촉진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더 세심한 접근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범주는 크게 10가지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각각 체류기간, 연령, 역할(책무), 외국인법상의 지위, 입국 사유, 위험(결핍, 국적, 종교, 교육수준 그리고 성(gender) 등이었다. 이러한 범주

구분에 따른 표적 집단의 설정은 앞서 언급한 행위영역의 설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공백 지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메우기 위한 시도였다.

2) 책임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과 실행

바젤시는 ‘바젤의 통합모델’의 실행을 위한 행정구조를 구축하면서 시 산하의 다양한 부서 간의 조율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양성과 통합’(Diversity and Inclusion: D&I)이라고 하는 부서를 두어 조율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도록 했다. D&I는 다른 부서들이 통합과 관련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원하면서, 개개의 통합촉진책들에 대해서는 독자적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서 앞서 언급한 특정한 표적 집단들별로 맞춤형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그것을 위해서는 비단 그들 특정 집단에 관한 관심만이 아니라 도시민들 전반에 대한 네트워킹과 다양한 서비스체계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D&I는 연방정부와의 소통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칸톤의 통합전략 수행을 주도했다. 이를 위하여 칸톤통합프로그램(Kantonales Integrationsprogramm: KIP)을 구축하여 특수한 통합촉진을 도모했고, 부서 간의 네트워킹 통합을 구축하여 교류와 공동결정이 원활하여지도록 했다.

한편, D&I를 구축하여 이민 행정의 주제를 도시 전체의 개발과 비전에 중심적인 주제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실행체계를 짠 것에서 나아가 바젤시는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 및 집단들과 이민자통합정책을 함께 실행해 갔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은 이민자들의 조직체들이었다. 그들은 이주민과 행정 사이에서의 연결체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더불어서 다양한 이민정책 전문 파트너 기관들, 재단들이 함께 간여했는데, 대표적으로 크리스토프 메리안 재단(Christoph Merian Stiftung: CMS), 공익을 위한 협회(Gemeinschaft für das Gute und Gemeinnützig: GGG) 등이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바젤시 내에 뿌리내려 작동하고 있다.

VI. 결론

스위스의 이민 행정 모델은 오랜 시간에 걸친 이민자 수입의 역사 속에서 태동하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스위스가 선진공업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노동력들이 자연스럽게 스위스로 유입됐고, 과도한 수준의 이민이 진행되자, 이민

정책과 행정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과 그를 통한 체계화된 집행이 필요해졌다. 나아가 중립국적 지위를 유지면서 국가적 정체성을 키워온 스위스는 망명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후 망명 신청자들의 증가로 이민정책과 난민정책 모두를 포괄적으로 구축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2000년대 중반의 대개혁을 통해 그러한 필요를 채웠다.

이러한 스위스 이민 행정의 기본특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두어 전체적인 행정체계를 총괄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난민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민정책과 난민정책의 통합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 둘째, 이민정책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내 다른 부처들 간에 서로 협력과 연계를 긴밀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책집행체계를 꾸려가고 있다. 셋째, 발전된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역할수행이 발전해 있고, 거기에 시민사회의 결합도 적절하게 모색되고 있다. 넷째, 이민정책의 내용상으로—바젤모델에서 확인 가능한 바—이민자들의 잠재성과 능동성을 강조하는 사과의 전환을 통해 역동적인 통합정책을 지역에서 구축해 가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국가부문 내 수평적 및 수직적 협력과 조율, 나아가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등이 그 안에서 잘 이루어져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독일어권 국가들이 대체로 지닌 특성인 바, 조정과 숙의의 과정이 발달한 만큼 신속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스위스 모델은 장점이 많으나 역시 약점도 있습니다. BFM의 조직과 스위스의 이주정책은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강점은 전문화된 인력,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 온 조직구조와 부서 간의 훌륭한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의 행정체계에서 거대한 행정조직을 다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약점입니다(Stefanie Allemann씨 인터뷰).

이주노동자 수용의 역사나 그에 대응한 행정력 구축의 측면에서 한국의 상황은 스위스보다 매우 초보적이다. 더불어 스위스의 맥락 및 제도와 한국의 그것은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닌다. 그런데도 스위스의 경험과 시스템으로부터 한국의 이민정책 및 행정체계의 재구축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여기서서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세 가지 점들을 강조하기로 한다.

첫째, 스위스가 초기에 단순노동력의 수입을 추진하다가 그들의 통합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점차 단순 인력의 수입을 중단시킨 점이다. 오늘날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그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정책이 동반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모두 최저임금의 안 좋은 일자리들에 쏠려 있다. 단기간의 체류만이 허가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중장기적인 한국사회로의 통합이 구조적으로 심하게 제약된 상황이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법과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면서, 스위스가 고민하며 방향을 선회한 이유,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탐구와 학습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스위스가 독립적인 이민정책 및 행정의 전담기구를 두고 그러면서도 원활한 부처 간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구축해 나가면서 이민자의 관리와 통합을 주도해 가고 있는 면모이다. 우리의 경우 이민자들을 관리하는 관제탑이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민자를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 파급된 정책영역 간에 혼선과 비일관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100만 시대를 맞이해서 향후 정책적 비전을 포함한 현안에 대한 능동적 해결을 도모할 적극적인 주무 기구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바젤모델의 내용적 측면에서 나타났듯이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사고의 기초에서부터 그들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범위와 깊이가 남다른 점이다. 바젤모델의 역사는 약 15년간량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는 기존의 사회통합정책의 실패로부터 나온 의미 있는 합 명제(Sinn-These)이다. 이민자들을 단순히 수동적인 통합 대상으로가 아니라 이민자의 유입을 통해 원주민과 이민자 모두의 상호역동적인 변화를 통한 새로운 통합의 방식을 찾는 것은 획기적인 사고이다. 더불어 입국 초기부터 이민자들에게 더욱 밀착된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내용의 집행, 그것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탐구가 동반되면 향후 우리의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할 것이다.

참고문헌

Afonso, Alexandre. 2007. "Policy Change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Economic Ideas and Immigration Control Reforms in Switzerland."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13(1): 1-38.

BFM. 2012. *Migrationsbericht*. Bern: Bundesamt für Migration.

- _____. 2011. “Bericht über die Internationale Migrationsszusammenarbeit.” Bern: Bundesamt für Migration. (Available from https://www.eda.admin.ch/dam/eda/de/documents/aussenpolitik/menschenrechte-menschliche-sicherheit/bericht-internationale-migrations-zusammenarbeit_de.pdf).
- _____. 2013. “Kantonale Ansprechstellen für Integrationsfragen — Rundschreiben: Eingabe der Programmvereinbarung inkl: kantonales Integrationsprogramm.” Bern: Bundesamt für Migration.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 Cerutti, Mauro. 2005. “La politique migratoire de la Suisse 1945-1970.” pp. 89-134 in *Histoire de la politique de migration, d’asile et d’intégration en Suisse depuis 1948*, edited by Hans Mahnig. Zurich: Seismo.
- D’Amato, Gianni. 2008. “Historische und soziologische Übersicht über die Migration in der Schweiz.” *Schweizerisches Jahrbuch für Entwicklungspolitik* 27(2) 177-195.
- Efionayi, Denise, Josef Martin Niederberger, and Philippe Wanner. 2005. “Switzerland Faces Common European Challenges.”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February 1, 2005.
- Ehret, Rebekka. 1999. *Leitbild und Handlungskonzept des Regierungsrates zur Integrationspolitik des Kantons Basel-Stadt*. Basel: Polizei- und Militärdepartement des Kantons Basel-Stadt.
- FOM. 2012. *Migration Report 2011*. Bern: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 Präsidialdepartement des Kantons Basel-Stadt. 2012. “Migration bringt Vielfalt: Vielfalt schafft Stärke — Ergänzung 2012 zum ‘Leitbild und Handlungskonzept des Regierungsrates zur Integrationspolitik des Kantons Basel-Stadt von 1999’.” (Available from <http://www.grosserrat.bs.ch/dokumente/100373/000000373558.pdf>).
- Niederberger, Josef Martin. 2004. *Ausgrenzen, Assimilieren, Integrieren: die Entwicklung einer schweizerischen Integrationspolitik*. Zürich: Seismo.
- _____. 2005. “Le développement d’une politique d’intégration suisse.” pp. 255-287 in *Histoire de la politique de migration, d’asile et d’intégration en Suisse depuis 1948*, edited by Hans Mahnig. Zurich: Seismo.
- Wichmann, Nicole, and Gianni D’Amato. 2010. *Migration und Integration in Basel-Stadt: Ein “Pionierkanton” unter der Lupe*. Neuchâtel: Swiss Forum for Migration and Population Studies (SFM).

(2014. 5. 4. 접수; 2014. 5. 17. 수정; 2014. 5. 31. 채택)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tion Administration in Switzerland

Myung-Joon Park
Korea Labor Institute

This paper aims to provide brief understanding of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in Switzerland,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system in Switzerland focusing on Basel city case.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the history of immigration policy in Switzerland and its present situation, and the regional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focusing on the so-called 'Basel model'. The Swiss immig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on system provide some implications about how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cooperates with civil society and local governments, and find new ways of integration through mutual dynamic change of both indigenous and immigrants.

Key words: Switzerland, Immigration policy, Immigration administration, Basel model

연구논문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

ethnic enclave 확장 및 지속에 따른 질적 사례연구*

김석호** · 하헌주***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민들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조선족의 거주지 집중 성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해 조선족들이 거주지 밀집지역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기대, 적응을 위한 노력 등을 그들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족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조선족의 집단거주지의 확장과 지속에 따른 거주지분리 현상을 조선족의 사회경제적 복지를 저해하고 빈곤과 실업으로 부적응과 사회적 퇴보가 나타나게 한다는 기존 연구의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에게 거주지 분리 현상은 그들에게 사회경제적·정치적 기능분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긍정적 울타리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조선족에게 한국에서의 그들의 거주지는 분리현상이 뒤따르더라도 살고 싶은 지역이며, 중국내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보다 나은 선택이기도 하다. 연구를 통해 소수민족집단거주지의 확장과 지속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설명하는 단면적 차원의 접근 이외에 개별적인 차원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조선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지원정책의 합리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소수민족집단, 조선족, 거주지 분리

* 심층면접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노동이주 추이와 사회통합정책의 미래』(김석호·정기선·이정은·여정희, 2011)에서 수집되었다. 심층면접 자료 관련 정보는 보고서의 ‘중국국적동포 심층면접 결과’를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eokhok@skku.edu.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hunjooha@skku.edu

I. 서론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민들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 목적의 유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의 유입은 기존의 거주민과의 객관적 차이가 무엇이든 거주민들에게는 생활방식에 대한 도전이 된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와 존 스콧슨(Elias and Scotson, 1965)에 의하면, 새로 등장한 이주민들은 그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들과 긴장이 발생하며 동시에 거주민들은 이주민들을 인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주민들이 이들에 대해 근심하게 되는 것은 적대적인 감정이 된다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기존 거주자들은 편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정당성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로 발생하는 특정 집단의 거주지 집중, 분리 현상은 거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공간의 양극화를 발생시켜 사회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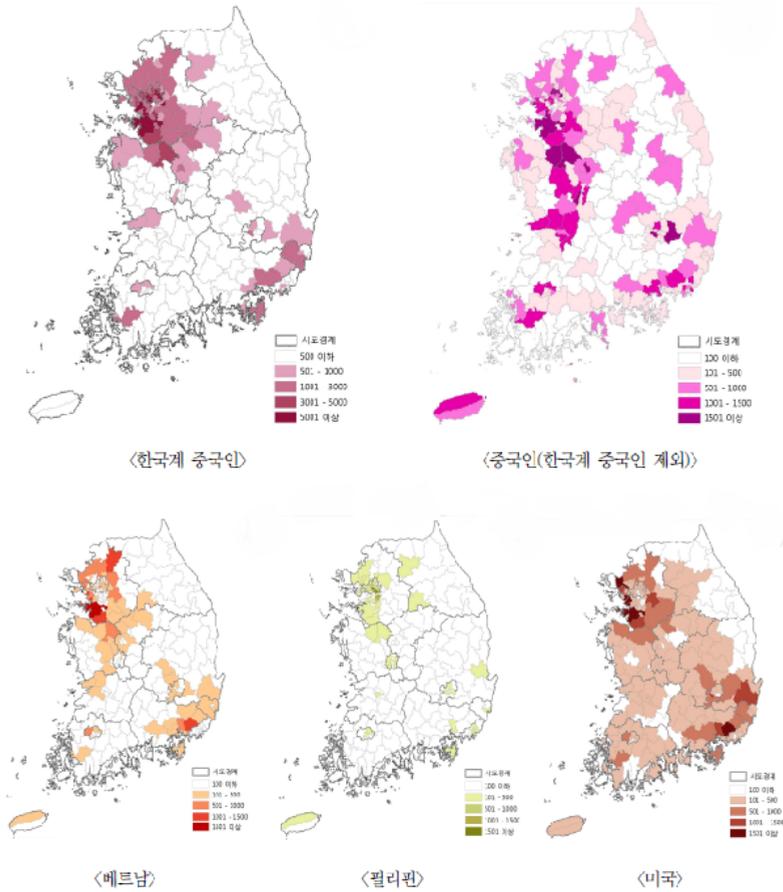
최근 새누리당의 이주민 출신 의원 주최로 열린 다문화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외국인 혐오단체 소속 회원들과의 다툼이 있었던 사건과 지난 4월에 발생한 수원 시신 훼손 살인사건의 범인이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제노포비아(Xenophobia)’¹⁾라는 단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한겨레, 2012.4.19). 사실 제노포비아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각종 범죄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있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분리 현상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민들의 소수민족집단지주지(Ethnic Enclave) 현상을 공고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외국인 이주민들은 주로 사업체 인근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며, 이들의 거주지 분포 추이는 국가별로 주거의 공간적 집중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림 1>의 외국인 국적별 분포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에 비해 조선족의 거주지 집중 성향이 월등히 높음을 보여준다. 조선족은 한국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된다.

조선족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조선족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전체 외

1)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이방인이라는 의미의 ‘제노(Xeno)’와 혐오를 의미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성된 단어이다. 외국인 혐오증(外國人嫌惡症) 혹은 외국인 혐오(外國人嫌惡)라고도 하는데, 이는 외국인 또는 이민족 집단을 혐오, 배척이나 증오하는 것을 말한다(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2012.8.1>).

〈그림 1〉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지 분포, 2008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국민의 64.7%와 44.0%를 차지하며, 조선족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조선족의 46.46%가 서울특별시에 34.27%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선족은 서울과 경기도에 조선족 전체의 80.7%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부표 1> 참조).

시·군·구별로 조선족의 분포를 살펴보면, 5천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총 8개 구(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송파구, 영등포구)와 경기지역 5개 시·군(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팔달구,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화성시)로 나타났다. 이 중 만 명 이상의 조선족 거주지역은 영등포구(35,400명), 구로구(26,382명), 안산시 단원구(18,730명), 금천구(17,177명), 관악구(14,476명)로, 조선족은 안

산시 단원구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에 집단 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오늘날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수도권 내부에서도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부표 2> 참조).

거주지 집중화 현상에 대한 국내의 기존연구들은 크게 거주지 분리지수 연구와 거주지 분리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박윤희(2010)은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인구의 거주지 분리에 대해 상이지수(Dissimilarity)와 지리정보시스템 기법을 활용한 맵핑(Mapping)을 통해 공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신인철(2007)은 경기도 및 부천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지 분리지수 선택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거주지 분리 측정 및 그에 대한 분석, 지역 환경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하성규·고성열(2006)은 안산시 외국인의 주거실태를 한국의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하였고, 박윤희(2011)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외국인 주민의 거주지 분리를 2006년과 2009년을 비교하여 거주지분리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최은진·김의준(2011)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체류자격(비전문직)과 출신국가(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를 통해 고찰하고 있으며, 이진영·남진(2012)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1년, 2005년, 2009년의 외국인의 거주지 분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거주지 분리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수도권의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전체에 대해 거주지 분리의 공간적 분포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의 경제적 수준 비교 및 관계 연구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도가 월등히 높은 조선족을 중심으로 거주지 분리 현상을 다루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박세훈·이영아(2010)는 구로구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공간적 집적의 특성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 정부정책의 3가지 측면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공간적 특성과 더불어 조선족이 소수민족집단을 형성하게 된 역사적·정책적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보다 복합적인 측면으로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현상에 접근하였다.

거주지 분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각종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거주지 분리 지역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조선족이 그 지역 안에서 처하게 되는 현실 및 당면 과제에 대한 구체적 경험연구는 거의 없으며 거주지 분리 지역에서 조선족의 심리적 경험은 조선족 간의 관계와 한국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족의 일상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거주지 분리의 지속에 따른 조선족 밀집지역의 특성 변화와 거주지 분리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조선족 밀집지역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과 선택이 조선족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실적 사례연구를 통해 접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들이 거주지 밀집지역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기대, 적응을 위한 노력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해보려고 하였다. 조선족의 시각에서 그들을 능동적인 선택의 주체로 보는 관점은 지금까지 경제적 이유로 인해 수동적인 공간에의 집적으로의 인식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거주지 분리가 빈곤의 집중화를 증가시켜 사회경제적 특성(범죄율, 교육수준, 편모가구, 복지에의 의존 증가 등)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기존 연구(Massey, 1990)에서와 같은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정책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검토

인종적, 사회경제적 소수집단인 빈곤층과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간적 패턴은 분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주지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거주지 분리로 초점이 맞추어진다(박윤환, 2011). 거주지 분리는 집단과 그 구성원들에게 입지할 장소와 도시생활의 전체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부여하며(Burgess, 1967),²⁾ 이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빈곤층과 이주민의 집단거주지의 상황을 악화시켜 이들은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하층계급(Underclass)으로 남게 된다.

매시(Massey, 1990)는 1970년대 도시의 흑인³⁾ 빈민 집중화 현상과 하위계층 출현을 야기한 주요한 원인으로 “인종적 분리(Racial Segregation)”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흑인의 빈곤 현상의 원인을 사회 경제학적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시는 흑인의 거주지 분리가 흑인의 높은 빈곤율과 도시의

2) 버제스(Burgess, 1967)에 따르면 도시는 경쟁(Competition), 지배(Dominance), 계승(Succession), 침입(Invasion)의 과정을 통해 동심원(Concentric Circles)의 형태로 배열되는데, 여기에는 중심지에서부터 이를 둘러싼 전이지대(Zone of Transition)로 확장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러한 도시의 확장은 주거와 직업에 따라 개인과 집단을 구분·분류·배분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3) 주거지의 격리는 흑인만의 사례가 아니며, 멕시코인, 한국인 등과 같은 다른 인종집단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 50년 이상 흑인과 같이 깊은 분리(혹은 격리)를 경험한 집단은 없으며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선 등의 변화 가능성이 매우 낮고 분리의 심각성 정도도 매우 높다(Massey and Denton, 1992).

하위계층을 구성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라고 설명한다. 거주지 분리의 증가는 흑인과 백인 간의 직업 이질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흑인과 백인 간의 수입 격차가 커지며,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증가시킨다. 흑인의 사회·경제학적 수준은 낮아지며 주택시장(Housing Market)에서 차별과 분리는 더욱 심화되고, 이는 다시 거주지 분리를 심화시키며, 흑인의 수입과 직업적 위신이 더욱 낮아지고, 차별과 인종분리는 더욱더 심화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매시는 이러한 악순환에 의해 고도화된 분리는 백인들의 의식 속에서 ‘흑인 인종’을 범죄나 해체된 가정, 복지 의존성과 연관시켜 빈곤의 이미지와 강하게 연관된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생성하게 된다. 백인들은 흑인을 고립된 소수 인종집단으로 한정지어 스스로를 흑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주택 시장에서 흑인을 분리·차별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게 된다.

매시 등(Massey et al., 1993)에 의하면, 이주민들은 사회자본을 획득해 감에 따라, 본국에서 동족을 불러들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착화되면서 거주지 분리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연쇄적 인구이동(chain migration)은 초기에 이주민들이 국적별로 모여며 희미한 경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계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주민의 집단이 커질수록 기존 거주민들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며, 이는 다시 차이의 심화를 가져온다.

거주지 분리 현상은 미국사회에서도 흑인의 사회적·경제적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흑인에게 빈곤과 실업은 당연시 되고 미혼모, 교육제도 부적응, 사회적 신체적 퇴보가 만연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사회·경제적 성공의 기회는 줄어들며 구조적으로 주류사회에서 공간적·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되어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 동기, 특성 등은 부차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Massey and Denton, 1992). 빈곤의 상승은 분리된 거주지에서의 상업지구 철수와 시장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분배를 감소시켜 이 지역에서 투자는 감소하고, 기존에 재산을 가진 거주민들은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증가하는 범죄는 이 지역에서 공공활동 감소와 집합적 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다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흑인은 이러한 지역적 구조에 적응하며 마약, 실업, 복지부족, 미혼모가 만연하고 이러한 것들이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배경에 노출된다.

그러나 미국사회에서의 흑인의 거주지 분리는 현상을 한국사회에서의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 현상에 그대로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인종적 격리’를 원인으로 설명하기에는 중국국적의 동포라는 조선족의 특성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거주지 분리 현상이 조선족에게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적 울타리가 되는지에 관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족 거주지의 집중화와 연쇄적 인구이동을 통해 조선족집단거주지 분리가 나타나는 과정과 소수민족집단 거주지의 확장 및 지속을 조선족의 시각에서 고찰해 볼 것이다.

Ⅲ. 자료 및 연구방법

1.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과정

조선족 거주지 분리현상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기 위한 심층면접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다. 우선, 성, 연령, 입국시기별로 다양한 대상자들로 구성하였다. 둘째, 한국으로 이주한 후 한국사회와의 소통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조선족 사회 네트워크와 한국사회와의 소통을 알아보고자 종교단체 회원, 정기적인 모임, 커뮤니티 등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자는 조선족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통해, 접근이 용이한 자영업자와 한국사회에 알려져 있는 조선족 관련단체, 종교단체 등의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소개받는 방식을 취하였다.

1) 조선족 밀집지역 자영업자들의 소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 내 조선족거주자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보인다. 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의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는 170,126명으로서 전국 조선족 총인구 366,154명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부표 2>참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조선족은 특히 몇 개 구(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안산시 단원구, 수원시 팔달구, 시흥시, 성남시 수정구)와 시에 밀집되어 거주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등포(20.8%)와 구로구(15.5%)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서울시 거주 조선족 총인구의 36.3%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약 1/3이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집중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등포와 구로구의 조선족 거주밀집지역의 자영업자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를 소개 받았다.

2) 한국 내 조선족 단체들 소개

한국으로의 이주 정착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관계들은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된다. 특히 2007년도부터 고국방문이 자유로워지자 친인척의 초청에 의한 한국으로의 이주가 급속히 늘어나 조선족 거주 지역의 친목모임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족들은 일상생활의 정보 교환이나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며, 나아가 조선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내 조선족 단체들을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를 소개받았다.

2. 면접대상자 선정

조선족 밀집지역의 자영업자와 한국 내 조선족 단체의 소개로 다양한 면접대상자들과 접촉하였으나,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조선족들 대부분은 노동시간이 길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정확한 기회를 가지기가 어려웠다. 건설업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퇴근 후 밤에 만난다 하더라도, 9시가 되어 면접 대상자들이 피곤해 하여 인터뷰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다. 가사도우미나 간병일을 하는 경우, 24시간 집이나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쉬는 날 이외에는 인터뷰가 불가능했다. 둘째, 조선족 밀집지역의 자영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비고	성별	생년	입국시기	중국직업	현직업	출생지	거주지
사례1	여	1960	2008	서비스업	간병	도문	조선족연합회
사례2	남	1951	2008	농민	건설일용직	연변	대구 건설 현장
사례3	남	1964	2000	은행	건설일용직	연길	영등포구 도림동
사례4	여	1953	2007	부녀주임	가사, 입주	연길	조선족연합회
사례5	여	1948	2007	식품공장	가사, 입주	도문	조선족연합회
사례6	여	1954	2005	백화상점	가사, 입주	훈춘	구로동
사례7	여	1949	2007	수도관리검사원	가사, 입주	흑룡강성	조선족교회
사례8	남	1965	2010	농사, 건축	건설일용직	용정	조선족연합회
사례9	여	1953	2008	간호사	간병	연길	조선족연합회
사례10	남	1937	1994	공무원	번역, 통역	도문	천안시
사례11	여	1950	2007	철로일	간병	용정	조선족교회
사례12	남	1957	2009	공무원	주방보조	연길	조선족연합회
사례13	남	1966	2008	농업, 이사	건설일용직	연변	조선족연합회
사례14	여	1945	1997	농업	가사, 입주	연변	조선족연합회
사례15	남	1952	2007	목탄업(한국기업)	건축, 전기통신	용정	조선족연합회

업자들을 만나 참여관찰과 인터뷰를 한 후, 그들이 소개해준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면접장소를 자신의 영업집으로 하기를 원했으며, 소개해준 사람들이 자신의 친인척들이라 인터뷰 중에도 가게 일을 돕기를 우선시해 인터뷰의 진행이 어려웠다. 셋째, 면접대상자의 다양한 연령층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젊은 층 조선족들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조선족의 젊은 층에는 유학생들이 많았으며, 실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일부 H-2 비자로 한국에 와 일하고 있는 젊은 층 조선족들의 경우, 경기도 일대에 숙식을 해결해주는 사업장에서 일하며 한 달에 2번 정도 외출하기 때문에 접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직 중이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심층면접을 진행한 대상자는 <표 1>과 같다.

IV. 결과

앞서 영등포구와 구로구의 조선족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주지 집중화 현상을 조선족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은 소수민족집단 거주지의 확장 및 지속을 조선족의 시각에서 고찰하게 함으로써, 조선족을 위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 정책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조선족과 한국인의 사회통합에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결과인 사례별 조선족 집단거주지역으로의 이주과정과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 및 거주지 분리에 대한 조선족들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반응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지 집중화(concentration) 과정

조선족들은 특정 집단거주지가 아닌 서울의 다른 지역(비집단거주지)에서 거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렇듯 조선족들이 특정지역에 모이게 되는 이유는 집중화에 따른 기능적 분화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적응의 편리성도 있겠지만, 그들은 매시(Massey, 1990)의 논의에서처럼 제조업, 금융 등 2, 3차 산업이 한 곳에 모임에 따라 사회경제적, 정치적 기

능 분화를 활용하기 위해 특정지역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때 초창기에 대림동으로 올 때만해도 이 동네가 빈 가게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아예 빈 가게가 없어요. 지하고 2층이고 다 들어와 있어요. 현재 대림동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이쪽에 와서 이용 하는거요. 모든 뭐 행정업무라든지 법률쪽이라든지, 그리고 저 그 뭐 먹거리라든지 다 여기서 소비 할 수 있는거요. 동대문에서도 택시타고 이쪽으로 와요. 대림동 쪽으로, 예. 그 외부에서 2동쪽으로 가보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쪽에, 직업을 찾는다든지, 뭐 서류를 한다든지 다 이쪽으로 많이 와요. 집중돼있으니까.

거주지 집중화 현상은 연쇄적 인구이동을 통해 더욱더 확장되어간다. 사례 1은 중국에 거주하던 친척들도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여 중국으로는 사업 이외에는 갈 일이 없으며, 사례 2의 경우 조카가 한국의 전자회사에 취직하였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한다.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은 그들의 친척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연쇄적 인구이동의 결과로 파악된다.

예전에 많이 오고 싶어서 한 10년 노력했는데 계속 오지 못하고 그래서 내 동생이 이리 결혼하게 되니까, 한국 신랑, 그래서 요청해서 이래 왔어요.

한국에 내 동생도 있고 친척도 있고, 우리는 중국에서 교포잖아요. 민족이니깐 한 번도 오지 못한 사람은 서울이라 하면 그렇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평양이라 하면 우리는 자주 갔다 오잖아요. 그래도 항상 자주 왔다 가는 곳이라 해도 평양이라 하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부모님 고향이고. 평양에 이북이라 하면 이북 사람이라 하면 고저 다 우리 혈육 같고, 사랑스럽고.

내가 처음 올 때는 여기 친구들이 초청해서 그래 왔어요.

하지만 조선족 집단거주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집중화된 거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직업에 맞추어 거주지를 선택한 결과였다.

아 그쪽에는 저는 그 쪽에는 생각 같은 거 안 해봤고 그런데 저는 저로서 머인가 좀 배우자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쪽 편에는 가리봉 쪽에는 제가 어 머 거기 한식 집도 큰 게 없고 그답에 머 그러니까 그쪽에는 직업도 소개받았으니 보내주니 간 기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내 가리봉 머 거기 가기 싫어서 안간 거 아니고 그답에 직업이 따라서 움직이니 자기 일하는 곳을 따라 온 거예요.

2. ethnic enclave의 확대로 인한 거주지역의 계층화

조선족의 거주지 집중화 현상은 소수민족집단지주지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한국에서 조선족의 집단거주지 내에서도 지역별로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 독산동에서 가리봉동 그리고 현재는 대림동을 중심으로 거주지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독산동과 같은 이전 거주지 집중화 지역은 낙후되어 경제력이 낮은 조선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는 거주지 집중화 현상이 가져오는 기능적 분화를 넘어, 상권에 따라 집단거주지 사이에 지역적 격차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대림동이 전체 동포사회에 중심이 됐어요. 예전에 가리봉동이 그 많이 사람들이 장사도 잘 됐잖습니까? 가리봉이 재개발 들어가면서 저기 지금 안 되고 대림동으로 많이 집중을 해요.

우리 살던 독산동 그 놀이터랑 가보면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 분들이 낮에도 그 쪽 둘러서 그 이불 앞에 놓고 장기 두고 뭐 포카 그 카드 놓고 많아요. 완전히 그 어디 놀이터가 노인정이 됐어요. 그 경제권이 약한 사람들이랑 그 쪽에 많이 거주해요. 그러면서 장사가 안됐어요. 안돼서 이쪽으로 선택한거죠. 예 예. 똑같이 한국도. 강남하고 여기가 차별이 확 틀리다시피 여건이 좋으면 강남 쪽 살지. 외제차 타고.

3. 거주지 분리에 대한 평가

거주지 분리에 대한 조선족의 인식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집단 거주지를 벗어나 주류 계층에 진입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하위계층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한국에 이주하여 집단 거주지에서 조선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족도 있다.

변화를 시키려면 우리들도 그 주류층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한국 사회에 진출해야죠. 근데 그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거요. 그 한국에서도 인정도 안 해주고, 중국에서 교수고 박사고 와도 한국에 아무 인정도 안 해줬습니다. 거 학력이고 뭐고. 힘들어요. 아무튼.

흑룡강성이니까내 우리 조선족이가 적어요. 적으니까나 한국에 오니까 그러니까는 내 기분이 좋아요. 제 조선족이거든 민족을 따라서 한국을 오니까 한국 제나라 같이 좋아요.

조선족집단거주지가 확장되고 지속됨에 따라 조선족들은 다문화 센터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지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그들은 거주지의 범죄율 증가를 줄이고자 네트워크를 통해 자발적으로 방법대를 운영하며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는 매시(Massey, 1990)의 거주지 분리의 확장 따른 흑인의 빈곤 영속화, 범죄율 증가, 미혼모 증가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

그렇죠. 우리 자체도 그 그런 그래도 이 질서랑 이게 안정이 돼야 이 거주 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맨날 이 뭐야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카랑 맨날 총질하고 그러믄 뭐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똑같은 도리 아닙니까. 근데 이 우리 동네를 그 좀 이 우리가 사는 동네를 우리도 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 모여서 이 방법활동 시작한 거죠.

4. 한국사회와의 소통

거주지 분리의 특성 중 하나는 외부와의 격차증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족들은 개인의 직접 소통보다는 종교단체와 한국에 있는 조선족단체를 통해 한국사회와 소통하고 있었다. 이는 직업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일용직이나 식당 등과 같은 업종에 종사할 경우 한국 사람과 소통할 기회는 적다. 그러나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의 경우는 직업의 특성상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그들도 이러한 한국인과의 소통 기회를 직업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저는 진짜 중국에서도 애들을 귀엽게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택한 일도 애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는 게 뭐가 좋다고 또 생각되는가 하면은, 주인들하

고 소통이 또 잘 되구요, 저. 그저. 가정일보고 애들 안 보면 일반적으로 크게 주인과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애들 보는 거는 대화가 어울리고 소통이 잘되고, 주인들 내 자식 잘 봐달라고 이쯤마 부를 데다가 이런데 이렇게 스트레스주고 이런 게 좀 적지 않을까요?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조선족들은 한국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한국사회에 관한 일상적인 정보나 관련 이슈들을 개인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얻는다. 한국 사람의 권유로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업무가 있을 경우 휴일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교회에 나가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옥은 땀길 이런…… 툭 털어 넣고 말하면 그럴 형편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좀 한가한 사람들이 땀기는 기고 여기 우리는 그렇게 교포들이 한가하지는 않자나요. 그래서 쪽 땀기지는 못하고 혹시 같이 가자고 차 가지고 오면 할 수없이 같이 가고 그런 거죠.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라 조선족들은 개별적 접근 보다는 조선족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해 조선족의 권익향상을 한국사회에 요구하며,⁴⁾ 이러한 공식적 단체는 조선족들과 한국사회가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볼 수 있다.

5. ethnic enclave의 지속: 조선족의 정주화 가능성

조선족들은 조상들의 나라인 한국사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차별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주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기도 한다. 그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중국에 돌아가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생활기반 자체가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가족과 친지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중국에서 그냥 살다가 죽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한국에서의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집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한

4) 조선족 관련 단체들 중에 한국의 시민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조선족연합회와 조선족교회이다.

국에 남아 힘들 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과 노후를 위한 것인데,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것보다 같은 돈으로 중국에서 집을 마련하고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15명의 면접 대상자 중 단 한사람만이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땅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에 친인척도 없고 중국내에서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간병일하는 집의 편리한 생활환경이 좋고, 한국생활에도 많이 익숙해졌다고 하였다. 이는 조선족들이 한국에서의 일터와 일상생활에 적응도가 높아지고, 친인척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오거나, 한국에서 결혼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면 한국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조선족들의 한국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나는 (한국이) 좋아요. 중국 가기 싫어요. 중국에서 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우리 조선족인데 중국에서 사업하자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동등한 입장이면 나를 생각 안 해줘요. 한족들이(을) 생각하지. 어떨지기는 기분 상황 때도 많고 그래요. 그래 어떨지기는 난 제 민족 찾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 참아. 나는 그저 팔자가 이렇구나 하고 참아야지. 한국에 오니까 나는 항상 웃는 웃음이래요. 더 좋아졌어요.

V. 토의

한국에서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국가별 집중현상은 다른 외국인 집단보다 조선족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구로구나 영등포구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조선족이 2만 명을 넘었으며, 그들의 소수민족집단(Ethnic Enclave)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조선족 스스로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고 그들의 시각에서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를 통해 소수민족집단지주의 확장과 지속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설명하는 단면적 차원의 접근 이외에 개별적인 차원들을 확인하였다.

매시(Massey, 1990)의 ‘인종적 분리’를 핵심으로 한 흑인의 거주지 분리와 관련된 논의들은 한국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으나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주지의 집중화가 가져오는 기능적 분화

는 조선족의 집단거주지 확대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 조선족 집단 거주지가 확장되고 지속됨에 따라 그 안에서 지역적 분화가 나타나 소위 ‘강남과 강북’ 같은 지역계층화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조선족은 중국국적동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종적 분리’를 통해 흑인 빈민의 집중화 현상과 하위계층으로의 종속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조선족은 수동적인 존재로 빈민의 집중화 현상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방법대를 운영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상업 지구가 이탈하게 되는 질 나쁜 환경이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와도 소통을 하기 위해 공식적 단체들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조선족의 집단거주지의 확장과 지속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은 조선족의 사회경제적 복지를 저해하고 빈곤과 실업으로 부적응과 사회적 퇴보가 나타나게 한다는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다. 조선족에게 거주지 분리 현상은 그들에게 빈곤을 옹아매기 보다는 사회경제적·정치적 기능분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긍정적 울타리가 되고 있다. 이는 거주지 분리가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의 긍정적 효과들이 상쇄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논의(Borjas, 2002)들과 일치한다. 조선족에게 한국에서의 그들이 거주지는 분리현상이 뒤따르더라도 살고 싶은 지역이며, 중국내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보다 나은 선택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료로 사용된 심층면접 인터뷰는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심도 깊게 파악하고, 사회통합정책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소수민족집단과 이로 인한 거주지 분리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다소 부족하다. 또한,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에 있어서 빈곤의 영속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적 부분의 자료가 부족하다. 후속 연구는 조선족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이들을 다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석호·정기선·이정은·여정희. 2011. 『노동이주 추이와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

- 박운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429-453.
- _____. 2011.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103-122.
- 박세훈·이영아. 2010.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연구》 3(2): 71-101.
- _____. 정소양.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국토연구》 64: 59-76.
- 신인철. 2007.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지 분리: 경기도 및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논문집』 한국인구학회. pp. 37-62. (통계청, 2007.11.30)
- 이진영·남진. 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1): 85-100.
- 정수열. 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 최은진·김의준. 2011. “출신국적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리.” 《도시행정학보》 24(4): 85-107.
- 하성규·고성열. 2006.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4(1): 9-31.
- 이본영. 2012.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에서 인종문제 대두”.” 《한겨레》 2012.4.19.
- Borjas, George. J. 2002. “Homeownership in the Immigrant Population.” *Journal of Urban Economics* 52(3): 448-476.
- Burgess, Ernest W. 1967 “The Growth of the City: An Introduction to a Research Project.” pp. 47-62 in *The City*, edited by Robert E. Park, Ernest W. Burgess, and Roderick McKenzie.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Society 18 (192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ias, Norbert and John L. Scotson. 1965. *The Established and the Outsiders: A sociological enquiry into community problems*. London: Frank Cass & Co.
- Iceland, John. 2002. “Beyond Bland and White: Metropolitan Residential Segregation in Multi-Ethnic America.”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eetings, Chicago, Illinois, United States, August 16-19, 2002. (Unpublished).
- Kain, John F. 1968. “Housing Segregation, Negro Employment, and Metropolitan Decentraliz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2(2): 175-197.
- Massey, Douglas S. 1990.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2): 329-57.

_____, and Denton. Nancy. A. 1992.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dela Pellegrino and J. Edward Taylor.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Norbert Elias, and John L Scotson. 1965. *The Established and the Outsiders*. London: Frank Cass & Co. Ltd. (박미애 역. 2005.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 한길사)

(2014. 3. 4. 접수; 2014. 3. 30. 수정; 2014. 4. 23. 채택)

〈부표 1〉 조선족의 시도별 분포, 2010년

(단위: 명, %)

	외국인 전체	조선족	전체 외국인 중 조선족 비율	지역별 조선족 비율
서울특별시	262,902	170,126	64.7	46.46
부산광역시	32,471	4,153	12.8	1.13
대구광역시	20,401	2,744	13.5	0.75
인천광역시	49,992	15,517	31.0	4.24
광주광역시	13,360	1,702	12.7	0.46
대전광역시	14,876	1,781	12.0	0.49
울산광역시	16,043	5,390	33.6	1.47
강원도	13,737	2,991	21.8	0.82
경기도	285,262	125,479	44.0	34.27
충청북도	24,453	5,616	23.0	1.53
충청남도	42,753	10,153	23.7	2.77
경상북도	36,895	4,953	13.4	1.35
경상남도	57,718	8,257	14.3	2.26
전라북도	20,152	2,770	13.7	0.76
전라남도	21,970	4,007	18.2	1.09
제주특별자치도	5,932	515	8.7	0.14
전국	918,917	366,154	39.8	100.00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2010)

〈부표 2〉 조선족의 시군구별 분포, 2010년

(단위: 명, %)

시도	지역	조선족	비중	시도	지역	조선족	비중
경기도	가평군	210	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2,408	1.42
	고양시덕양구	2,220	1.77		강동구	3,472	2.04
	고양시일산동구	1,770	1.41		강북구	2,049	1.2
	고양시일산서구	1,925	1.53		강서구	3,763	2.21
	과천시	139	0.11		관악구	14,476	8.51
	광명시	3,173	2.53		광진구	8,896	5.23
	광주시	2,755	2.2		구로구	26,382	15.51
	구리시	616	0.49		금천구	17,177	10.1
	군포시	2,949	2.35		노원구	1,657	0.97
	김포시	2,901	2.31		도봉구	1,107	0.65
	남양주시	1,563	1.25		동대문구	5,443	3.2
	동두천시	541	0.43		동작구	8,067	4.74
	부천시소사구	2,990	2.38		마포구	3,411	2
	부천시오정구	995	0.79		서대문구	1,959	1.15
	부천시원미구	4,259	3.39		서초구	2,059	1.21
	성남시분당구	732	0.58		성남시	4,699	2.76
	성남시수정구	7,325	5.84	성북구	2,585	1.52	
	성남시중원구	2,650	2.11	송파구	5,520	3.24	
	수원시권선구	4,401	3.51	양천구	3,482	2.05	
	수원시영통구	1,737	1.38	영등포구	35,400	20.81	
	수원시장안구	2,915	2.32	용산구	3,182	1.87	
	수원시팔달구	8,667	6.91	은평구	2,329	1.37	
	시흥시	7,418	5.91	종로구	3,776	2.22	
	안산시단원구	18,730	14.93	중구	3,786	2.23	
	안산시상록구	2,642	2.11	중랑구	3,041	1.79	
	안성시	2,111	1.68	계		170,126	100.00
	안양시동안구	1,027	0.82				
	안양시만안구	3,700	2.95				
	양주시	1,693	1.35				
	양평군	404	0.32				
	여주군	749	0.6				
	연천군	228	0.18				
	오산시	2,923	2.33				
용인시	14	0.01					
용인시기흥구	2,154	1.72					
용인시수지구	865	0.69					
용인시처인구	2,862	2.28					
의왕시	577	0.46					
의정부시	1,722	1.37					
이천시	1,372	1.09					
파주시	2,429	1.94					
평택시	4,383	3.49					
포천시	1,910	1.52					
하남시	738	0.59					
화성시	5,689	4.53					
화성시동부출장소	1,706	1.36					
계		125,479	100.00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2010)

Residential Segregation for Ethnic Korean Chinese in Korea: A Qualitative Case Study after the Expansion and Continuance of Ethnic Enclaves

Hun-Joo Ha

Sungkyunkwan University

Seok-Ho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has been on the rise across the country. Among them, residential concentration by ethnic Korean-Chinese people was particularly high.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asons why these Korean-Chinese people decided to live together, their expectations and efforts to adapt themselves from their standpoint. According to analysis on these ethnic Korean-Chinese people using qualitative research,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e results of conventional studies that residential segregation after the expansion and continuance of ethnic enclaves reduces socioeconomic welfare for ethnic Korean-Chinese people and accelerates their poverty and unemployment. The residential segregation for ethnic Korean-Chinese people in Korea has been a positive means for them to differentiat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unctions in an effective manner. Furthermore, this kind of enclave has been their better choice in Korea despite residential segregation. After all, it's been better than the discrimination on ethnic minorities in China. The study results found individual dimensions in addition to cross-sectional approach which explains the segregation based on economic aspects only o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after the expansion and continuance of ethnic enclaves. It appears that they would be helpful in making a rational decision on policy intervention and support policy for ethnic Korean-Chinese people in Korea.

Key words: Ethnic Enclave, Korean-Chinese, Residential Segregation

연구논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과 사회통합

서영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다문화현상의 중심에 있는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통합은 여성결혼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인 남편과 가족, 출신국 친구와 한국인 친구, 직장 동료 등과의 사회적 관계망과 한국인들과의 관계와 인식,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관계에서 결혼 경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수직적인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족의 지지가 부족한 편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국의 가족과 출신국 친구들과의 관계망은 정서적인 지지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폐쇄적인 성격으로 자신들이 '외국인'임을 자각하는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이들이 '외국인'임을 느끼는 부분은 일반 한국인들과의 관계와 인식 그리고 취업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크게 느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갖기는 무척 어려우며,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족, 교육, 복지, 고용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주제어: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응, 사회통합, 정체성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chinohako@hanmail.net.

I. 문제 제기

최근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체류 외국인의 수적 증가다.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막을 수 없는 현상으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는 여성결혼이민자가, 2000년대에는 유학생이 늘기 시작해 2012년에는 이민자의 수가 133만 명을 넘었다.¹⁾ 이민자의 증가는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 단체의 등장과 시민운동의 전개, 산업연수제의 폐지와 고용허가제의 시행, 외국인 집거지역의 형성, 지자체의 국제결혼 주선 및 지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각종 지원제도의 시행 등 다양한 현상을 동반하며,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적으로 동질적인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한국에도 1900년대 초반부터 화교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였고, 해방 이후부터 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혼혈인²⁾들도 존재했지만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감춰진 집단으로 법적인 차별과 함께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이면에는 순혈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설동훈, 2005).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시선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2005년 5월, 외국인 문제의 위상이 “대통령 지시 과제”로 격상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06년 4월 국정회의에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 후, 정부의 각 부처는 “이주자를 통합하려는 다문화주의 정책” 개발과 입안을 위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오경석·김희정·이선옥·박홍순·정진현·정혜실·양영자·오현선·류성환·김희수·강희복, 2007: 33). 그리고 미식축구 선수인 하인즈 워드의 활약과 방한의 영향으로 한국사회의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민족주의의 인종주의적 측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문화담론이 대중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전경수·김민정·남영호·박동성, 2008; 김은미·양옥경·이해영, 2009).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과 담론에서 경험적 부족이 지적되는 것이 사실이다(김은미 외, 2009). ‘다문화현상’이 한국사회에 새로운

1)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 장기 체류자와 국적 취득자를 합한 숫자로 UN의 이민자 개념 정의에 따라 계산한 수치다.

2) 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혼혈인’ 단체인 국제가족한국총연합의 배기철 회장은 자신들을 ‘주둔지 혼혈인’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전경수·김민정·남영호·박동성, 2008: 132 재인용).

것이었던 때문이다. 해외의 다문화사회 논의의 배경이 된 국가들은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전통적인 이민국가나 근대 국가 건설 시기부터 다인종·다민족이었던 반면, 한국의 이민자들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적 지향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프레임의 개념적 혼란 문제(원숙연, 2008), 복지정책과 같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지원 프로그램의 적합성 문제 등이 지적된다(설동훈·윤홍식, 2008).

정책적인 문제와 함께 시민사회 일반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불쌍한 사람들’, ‘잠정적 범외국인’, ‘불결하고 냄새나는 외국인’이라고 인식하거나,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온정적, 시혜적 태도, 인종과 출신국에 기반을 둔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인 가치관 등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미흡한 정책과 잘못된 인식은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어렵게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양한 인종 집단이 함께 모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911테러, 프랑스 소요사태, 브레이빅 사건 등 인종 간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들은 이민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과제다.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도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한국의 다문화현상의 관심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포괄하는 다문화가정과 이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문제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민과 외국인 부부’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탄력성(Family Resilience)에 의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을 취하지 않은 반면, 한국은 ‘결혼이민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통합정책은 다른 나라의 정책에 비해 매우 세분되어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설동훈·강기정·이병하, 2011). 한국의 사회통합정책의 1차 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이며 이들의 적응을 통해, 그 자녀들과 가족의 사회통합의 문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지구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위치를 살펴보고,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배경

1. 전지구화와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이민정책은 크게 ‘누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와 ‘외국인을 어떻게 국민과 잘 어울려 살아가게 할 것인가?’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한경구·설동훈·이철우·이충훈·이혜경·정기선·한건수, 2012). 이 중 후자에 해당하는 영역이 언어·문화교육, 차별 방지와 관련된 이민자사회통합정책이다. 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적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수용국 사회의 사회구조, 문화적 관습과 관련된 것이며, 두 번째는 이민자 집단의 외형적 차이, 문화적 거리감, 사회적 관계망, 이민자 출신국 공동체의 유무 등과 같은 이민자들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Castles and Miller, 2009).

수용국 사회의 사회구조, 문화적 관습은 전지구적인 경제질서와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파레냐스(Parreñas, 2001)는 로마와 로스엔젤레스의 필리핀 여성 가사노동자들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이 민족국가, 가족, 노동시장, 이주민공동체라는 4가지 이주제도에 의해 자신들의 주체를 형성하는 지점인 탈구위치(dislocation)를 분석했다. 그녀는 이탈리아(로마)와 미국(로스엔젤레스)의 두 지역에 국가,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맥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여성 가사노동자들은 글로벌경제에서 후기산업국 경제블럭의 제2군 이주민 노동자의 일부로 유사한 지위를 공유함을 보여주며, 미시적인 맥락의 차이보다는 세계화의 거시과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포르테스와 루벤 럼바우트(Portes and Ruben Rumbaut, 1996)는 정부정책, 에스닉 분류 패턴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조건, 에스닉 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응접의 맥락(Contexts of Reception)에 따라 이주민들의 경험이 지역마다 다름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미시적인 맥락에서 이민자 집단의 상황이 다른 것을 보여주지만 미국 내 저개발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하층계급 노동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전지구적인 경제질서는 많은 이민자를 수용국의 하층노동자로 편입시킨다. 선진국의 경제구조가 발전하면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분화가 발생하며, 저숙련, 제조업분야의 2차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저개발 국가의 이민자들을 노동력으로 충원하게 된다는 것이다(Piore, 1979). 여기에는 젠더, 인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 성매매, 식당 및 호텔직원, 의류 및 전자제품조립라인 등 ‘전형적인 여성 직종’ 노동 시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남성노동자의 이주에 가족재결합의 형태로 부수적으로 또는 수동적

으로 이주하던 것과 달리, 여성이 주체가 되어 이동하는 여성들의 이주가 급격하게 성장했다(Castles and Miller, 2009). 특히 여성은 목적국가의 폐쇄적인 정책과 강한 규제에도 ‘결혼’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이주가 가능하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21세기 초에 증가했다.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불균형과 농촌지역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해지자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으로 많은 지역의 지자체가 결혼중개업체와 함께 국제결혼을 지원했다. 한국 정부는 신부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을 묵인하는 정책을 시행했다(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정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한국의 국제결혼의 증가,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도 전지구적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다. 설동훈 외(2005)는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를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송출국의 실업과 빈곤, 한국사회의 정부정책과 결혼중개업체의 개입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다른 연구에서도 볼 할 수 있다. 김현미(2006)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문제를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이주 체제, 이주 제도, 개별 이주자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국제결혼의 구조적인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환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혜경(2005)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가정의 문제 및 대응방식을 분석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정 내 문제로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부부관계의 계급화를 지적하였다. 즉 국가 간 불평등이 사적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가 마치 준계급 관계로 변한다는 것이다. 부부 간의 문제는 국가 간 불평등의 문제와 결혼중개업체의 영향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조직적인 중개업자에 의한 상업화된 결혼은 인간의 몸, 정서, 감정, 인격까지 구매-판매의 관계로 위치시키며, 외국 여성의 몸과 인격이 ‘구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의식을 강화시켜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강화한다(김현미, 2006). 김현미(2006)는 이러한 원인을 현재의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의 중층적인 하청구조가 여성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남성의 권력을 확장한 불균형적 젠더 관계에 기반하고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한건수와 설동훈(2006)의 보고서에서도 국제결혼을 전 지구적 발전 격차와 국내 결혼시장의 교란, 그리고 상업화된 결혼중개업체의 증가라는 현상이 맞물려서 발생한 구조적 현상으로 보고, 실제 국제결혼 가족이 겪는 문제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차이 또는 가족 내 문제’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봤다.

2.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망

한 사회에서 종족적 소수자(Ethnic Minority)는 타인에 의한 정의(Other-Definition)와 자신들에 의한 정의(Self-Definition)의 산물이며 이들에게 문화는 정체성의 원천이며, 배제와 차별에 대한 저항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Castle and Miller, 2009). 이민자 통합의 영역으로 개인과 집단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접변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자신들을 둘러싼 새로운 문화적 환경의 주요한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현상으로, 새로운 사회에서 가족을 포함한 여러 집단들과의 접촉 빈도와 친밀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Entzinger and Biezeveld, 2003). 이민자들의 정체성의 형성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핵심적인 것이다. 관계망 또는 연결망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며, 제도화라는 최초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Bourdieu, 1986),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되며,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Coleman, 1988) 사회구조 속에 배태되어(Lin, 2001)있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개인과 공동체, 전체사회의 영역에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체성과 인지의 재강화에 기여한다. 즉, 유사한 이해관계와 자원을 공유하는 사회집단 구성원과 개인으로서 사람의 가치가 인지되고 보충 받는다는 것은 감정적 지지뿐만 아니라 특정 자원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를 공적으로 인정해준다(Lin, 2001). 사회자본의 축적에 따른 정체성의 확립과 결속은 포르테스(Portes, 1988)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자본은 자신의 집단, 자신의 부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 강한 동기를 부여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함께 위협받게 되면 노동자들은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각자 자발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네트워크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내부 지향적이며 네트워크의 배타적 정체성과 단체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Putnam, 2000). 이와 더불어 사회자본의 심리적 측면은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우리의 운명이 연결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우리의 처지를 개선한다(Putnam, 2000). 이민자들은 수용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정체성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수용국의 정책이다. 이주정책은 이민자의 체류자격과 권리를 부여하며, 이주자들의 의식을 형성한다. 한국의 산업연수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주변화 시켰으며(설동훈,

1999), 화교에 대한 법적 차별은 이들의 민족정체성을 확립시켰다(박경태, 2004).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경험한다. 구미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에서 박신규(2010)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체성이 시기적으로 계속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민초기에는 가족을 기반으로 둔 젠더정체성이 나타나고, 이주적응과 정착기에는 민족정체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민이 되기’와 ‘한국인 되기’가 이주여성 내부에서 분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 내에서 이주여성에게 한국인이 아니라는 정체성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부각된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데, 처음에는 자신의 본명을 고수하려다가도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관계 때문에 개명을 하는 상황이나, 자녀의 언어능력과 자신의 언어능력을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점에서 특히 자신들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점은 한국인들이 국민과 민족 개념을 종종 혼동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설동훈 외(2006)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한국인과 한민족이라는 범주에서 복합적인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 여성들은 따갈로쉬라는 정체성과 함께, 한국 내 경제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며(강미연 외, 2009), 몽골, 필리핀,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하층노동자로서 자리매겨지는 것을 볼 수 있다(윤형숙, 2004, 김현미 외, 2008). 박신규의 연구(2010)는 구미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체성 분석에서 입국초기 젠더와 가족 정체성의 형성을, 이주과정에서는 젠더와 계급정체성을 그리고 이주적응과 정착기에 민족정체성의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범주에 속하는 이주노동자 중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의 모습에서는 저임금 시장에서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그리고 언어의 사용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이혜경, 2005).

사회자본의 또 다른 대표적인 기능은 정보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거나 정보의 통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Coleman, 1988; Lin, 2001).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과 정보의 획득은 무척 중요하게 작용한다. 빈곤한 도시공동체의 일상적인 생존은 대부분 같은 처지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의지하며 다른 지역의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나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마저도 박탈당한다는 주장(Portes, 1998)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의 문제와 함께, 직장 내 고용, 진급과 같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Lin, 2001) 새로운 사회인 한국에서 빈약한 사회적 관계망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취업과 정보획득, 진급

의 기회를 제한한다. 퍼트남(Putnam, 2000)은 일부집단에게 적용되는 규범의 차별적 작동에 의한 인종적, 계급적 불평등이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사회자본에 따른 불평등의 연구는 린의 연구를 볼 수 있는데, 린(Lin, 2001)은 자본의 불평등은 자본결손(Capital Deficit)과 환원결손(Return Deficit)이라는 두 가지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로 보았다. 자본결손은 자본의 상이한 투자와 기회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한 집단에게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이며, 환원결손은 동일하게 주어진 자본의 질과 양이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의 구성원에게 상이한 환원이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자본결손의 상이한 투자 혹은 상이한 기회, 환원 자본의 인지적 결핍 혹은 적절한 자본의 상이한 동원, 그리고 두 가지 결핍의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자본이 적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 가족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회자본을 가질 수도 있다(양인숙·김선혜,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은 집단 간 비교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웃관계 및 자조 집단의 참여 여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설동훈·윤홍식, 2008), 높은 생활만족도를 주는 것(장지혜, 2007; 강현, 2012 재인용)으로 파악되나, 한국사회 적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김정훈, 2009; 양순미, 2010; 양인숙·김선혜 2011 재인용).

Ⅲ. 연구방법

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단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상자들과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일상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했다. 면접기간은 2009년 7월 ~ 2009년 10월까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심층면접이 가능한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로 이혼과 별거를 하지 않으며, 가족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면접자들은 한국에 거주하게 된지 보통 3년 이상이 지난 이들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초기에 나타나는 심각한 수준의 구타나 폭력 등과 같은 중대한 이혼사유가 없었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갈등

〈표 1〉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사례	출신국적	출생년도	결혼시기	거주지	국제결혼 경로 또는 계기
A	중국	1976	2006년	전주	1995-1997년 노동자, 2003-2005년 유학생
B	우크라이나	1981	2007년	익산	2002-2005년 유학생
C	베트남	1987	2005년	전주	국제결혼중개업체
D	베트남	1986	2005년	전주	국제결혼중개업체
E	중국	1982	2004년	전주	국제결혼중개업체
F	베트남	1985	2006년	전주	국제결혼중개업체
G	베트남	1984	2005년	전주	국제결혼중개업체

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거나 혹은 점점 해소되어가고 있는 상태로 문화충격 단계를 넘어선 문화접변 단계에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접은 1인당 2-3회 진행되었고, 부족한 내용이나 보충할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 면접을 실시했다.

IV. 연구결과

1.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경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본국 내의 경제적 요건이 크게 작용한다.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본국 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국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설동훈 외(2005)의 보고서에서도 본국 가족의 소득수준이 대체로 평균수준이며, 10대 후반의 나이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공장 노동자 또는 집안일을 돕는 정도로 딱히 장래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국 내에서 취업과 관련된 노력을 기울였다면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주위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또한 최근 ‘한류’의 영향도 이들이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설동훈 외, 2005; 김현미, 2006에서 재인용).

친척 언니가 한국으로 결혼해서 갔어요. 친구의 친구도 한국으로 결혼했고…….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그게 좋겠다고 하시고……. 특별히 잘 못

산다는 얘기는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한국에서 힘든 거 나도 (부모님에게) 말 잘 안하는데, 그 애들도 안했으니까 (그 애들) 부모님도 잘 모르고, 그냥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처음에는 집에 돈도 잘 보내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는 잘 보이고, 힘든 거는 잘 안보이잖아요. 한국가면 잘 사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결혼해서 오죠. 저도 이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사람들 많이 결혼해서 오니까 저도 할 일도 없고, 결혼해서 왔죠(사례 F, 베트남, 25세).

중국 출신인 사례 E의 경우도 베트남 면접자들과 비슷하다. E는 길림성의 장춘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은 과일, 채소나 일용품 같은 것들을 트럭에 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 부모님의 수입이 일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평균정도는 된다고 했다. E는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장춘의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 장춘에는 조선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건너간 조선족들의 이야기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다.

사례 A는 중국 상하이에 살았으며, 가족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로 아버지는 중국의 기업체의 회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일을 하지는 않는다. A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졸업 후 언니가 신문광고에서 본 구직광고를 보고 대학을 안가서 쉬고 있는 A에게 한국 공장에서 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전주 BYC에 취직하게 되었다. 당시 면접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 500달러였으나 한국에서 실제로 받은 월급은 약 300달러 수준이었다고 한다. A의 말에 의하면 당시 자신이 중국에서 월급 수준이 200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많은 돈도 아니었다고 한다. A는 연수생 시절에 임시직으로 일하던 현재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연인 관계가 되어 중국으로 귀국한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후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 2006년에 결혼하였다.

사례 B는 평소 동양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대학을 다니던 중에 친척 언니가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게 되자,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였다. B는 공무원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대학을 다니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국제결혼에 경제적인 이유가 많은 베트남 출신 면접자들은 부모님께 송금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좋았어요. 나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베트남)집에 보내고 싶어서 일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싫어해요. 그때 월급 60만원 받았는데, 돈도 많이 못 받고, 집안 일 못한다고 싫어해요. [……] 많이 싸우고, 싫어했는데, 10만원만 (베트남) 집에 보내도 큰돈이니 까 계속 말해서 일했어요. 거기 일 없고, 다른 데 일할 때도 싫어했는데, 계속 일하니까 지금은 안 싫어해요(사례 F, 베트남, 25세).

사례 F와 사례 C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F는 자신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베트남에 송금할 수 있는 것에는 무척 만족해하고 있다. C도 자신의 직업과 직종은 높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해했다.

2. 가족과의 관계와 가족의 지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을 포함한 가족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편은 법률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신분을 보증하며, 입국 이후 즉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를 보장하는 비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단순히 체류자격이라는 측면을 떠나서도 인간에게 가족은 무척 중요한 존재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족은 가장 많은 시간을 접하면서 언어와 한국사회의 문화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면접자들의 대부분은 가족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은 없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이기도 하겠지만 부부 간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두드러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³⁾ 소소한 문화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일반 한국인 부부들이 겪는 부부 간의 갈등

3) 설동훈 외(2005)에 따르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절반 이상(57.7%)이 한국어 의사소통과 사고방식, 생활방식,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지만 부부 간의 갈등 사유에 부모와의 불화는 2.8%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며, 이혼, 별거 사유에서도 시부모와의 불화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시부모와의 관계가 크게 중요한 영향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형숙(2004)의 연구에서도 시부모의 간섭 등에 대해 불만은 많이 있었지만 확대한다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과 시부모와의 갈등 정도와 비슷한 정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면접자들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 음식만 먹어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그런지 베트남 음식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싫어해요. 한국 음식 처음에는 매워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베트남 음식 몰래 해 먹었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뭐라고 해요(사례 C, 베트남, 24세).

송편을 만드는데, 중국에서는 만두를 만들어 먹는데 동전을 넣어요. 그래서 다 만들면 (동전이)어디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골라 먹는 사람이 그해 행운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길 했더니, 위험하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이빨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혼났어요. 그런다고 중국에서 진짜로 다친 사람은 없거든요. 동전 들어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 저는 만두 만드는 거랑 비슷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었는데(만두의 양끝을 서로 붙여서 동그란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함), 이건 송편이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혼났어요(사례 E, 중국, 28세).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도 그거 중국어(한자) 쓴다고 생각해서 내가 한자모 르면 그것도 모르냐고 해요. 우리는 영어도 잘 하고 중국어도 잘못하니깐 남편이랑 시아버지랑 답답해해요. [……] 그래서 쓰는 거는 프랑스 때문에 한자 안 쓰고, 프랑스어(로마자 표기법)로 쓴다고 했더니 전쟁도 그렇고 불쌍하다고 했어요(사례 D, 베트남, 25세).

가족들은 여성결혼이민자 출신국을 못 사는 나라로, 또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낮게 평가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알선된 결혼이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돈을 주고 사온 것으로 여기고 동등한 가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례 C는 남편의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으며, 가끔 친척을 만나러 가거나, 가족이 함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경우에도 일방적인 통보의 형태였으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한다. 사례 D의 경우도 경제적인 면에서 수동적이어서 장을 보는 비용, 유아용품 비용 등과 함께 매일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으며, 공과금 수납이나 어린이집 비용 등

은 남편이 처리했다. 가족 내 결정권의 문제와 함께 수직적인 부부관계는 언어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아내를 ‘야’라고 부르거나 ‘○○해라’, ‘○○가져와’와 같은 명령조나 손아랫사람을 대하는 말투를 사용한다고 했다(사례 C, 사례 G).

가족 내 언어사용은 다른 측면도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구사능력이 좋지 못하고, 한국사회와 문화를 잘 몰라 ‘말상대’를 하기에 부족하다 보니 남편은 친구나 부모,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고, 아내와의 대화는 적으며, 아내와의 대화나 정서적인 교류를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는다.

남편은 친구들 잘 만나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해요. (우리)집에서 할 때도 있는데, 저는 같이 안 하고 딴 일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나이도 많고, 그냥 잘 몰라요. [……] 남편도 내 친구 잘 몰라요. 팔복동 친구는 아는데, 다른 친구들은 몰라요. 남편이랑 내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는 거는 없어요(사례 C, 베트남, 24세).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사회를 잘 몰라서 위험하다’(사례 C), ‘사기 및 범죄에의 노출(사례 D)’ 등을 이유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집 밖에 나가거나 한국인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사용이나 한국의 문화 및 제도 등을 빨리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나 가족 내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지지하지 않는다.

(공과금 수납을) 그거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남편이 해요. 은행가는 거 잘 몰라요. 현금지급기는 쓸 수 있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하는 지 잘 몰라요. 말도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카드 가지고 다녀요. 병원이 다 다르게 있는 거는 알아요. (소아과, 내과, 안과 등의 분류를 말함) 소아과, 치과, 내과, 산부인과 이런 거는 알겠는데,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집 옆에 병원 가면 다 있으니까 그냥 가요. (공공기관) 그런 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말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한자가 많아서 힘들어요. 남편은 어려우니까, 그리고 밖에 위험하니까 나가는 거 잘 안 좋아해요. 그런거는 남편이 한다고 해요(사례 D, 베트남, 25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과 경제력의 획득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이 한국에서 일 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윤형숙(2004)은 필리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감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 중에 하나는 가정이라는 고립된 장소에서 나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례 C는 남편이 반대해서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반면, 사례 F와 사례 G의 경우에는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 설득하여 자신들이 일을 하게 되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아닌 경우에는 남편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전 연애기간이 길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갈등은 거의 없다. 다만 결혼 초기 부모님의 반대나 부모님과의 문화적인 차이에서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가족 내 수직적인 관계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아버님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뭐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이래서 시부모 대접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겠나.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자주 찾아뵙고 그러니까 지금은 좋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내려주고 출근해요. 남편요? ○○ 면사무소에서 일해요. [……]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 직장이 익산에서 전주 오는 길이고, 저는 여기(전주)에서 일하니까. [……] 집에 갈 때도 제가 가서 태우고 가야죠. [……] 제가 늦게 끝나면요? 그럼 남편은 아마 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버스 타고 집에 가겠지요. (웃음) (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사례 B의 가족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도 크게 지지한다.

(시아버지께서) 니가 나가서 일을 해야 좋지 않겠냐고, 한국에서 살려면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일하면서 배우는 게 많으니까 집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요새는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한번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여기 저기 알아봐주셨어요. 남편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고향 생각만 나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했고, 저도 일하고 싶었고 해서 통역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가족의 지원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 A와 B의 가족은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했지만 취업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B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권유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남편은 현재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B의 가족도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원에 다니며 간단한 통역과 번역 일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족 이외에 가장 가까운 집단은 혈연관계인 친족집단이다. 친족과의 접촉은 설날과 추석, 제사의 경우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이지만 지리적인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례 C의 경우에는 남편의 사촌이 아랫집에 살아서 자주 접촉하는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은 지리적 거리가 먼 서울, 부산, 경기도의 친족과는 거의 만나지 않으며, 전라북도권에 살고 있는 친족들의 경우에는 3-4달에 1번 정도로 접촉하고 있다. 그와 함께 친족이 남편의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은 친족으로부터 아내와 관련된 취업이나 기타 정보들을 얻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친족과 여성결혼이민자와 관계는 직업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남편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다.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친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없고,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⁴⁾

3. 본국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면접자들은 본국의 가족과는 거의 매일 1회 정도 전화통화나 인터넷 화상통화를 하고 있으며, 출산이나 본국의 가족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는 고향을 방문하거나, 본국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본국의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는 1년에 1회도 되지 않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본국의 가족에 대한 의존도는 무척 높다.

당연히 보고 싶죠. 힘들 때마다 생각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날 때도 있죠. 처음에는 집 생각나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좋아서 한 결혼이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니까 힘들 때,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힘내고 막상 전화할 때는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다가도 끊고 나면,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걱정 안 끼쳐 드리는 것이 제가 여기서 잘 지내는 거니까 열심히 살 수 있고, 뭐 그렇죠(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처음 결혼해 왔을 때는 전화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엄마도 걱정 많이 하고 그게 안 좋아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안 울게 됐

4) 설동훈 외(2005)와 한건수(2006)의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을 통해 남편의 친족에만 편입되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에도 인근에 사는 친척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명절을 제외하고 왕래가 거의 없으며, 명절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친척들과 긴밀한 관계는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요. 지금은 전화하면 이야기해요...그냥 여기 이야기랑 거기 이야기랑 하고 특별히 하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사례 D, 베트남, 25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본국의 가족이란 ‘내가 잘 지내야 부모님도 잘 지내는’, ‘멀리 있지만 힘이 되어주는’ 존재다. 이와 함께 잦은 통화는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사례 B는 같은 출신국 사람들과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다면서 본국의 가족들과 통화를 하면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국어의 사용과 고국의 소식 등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본국의 가족들은 든든한 지지자다. 다만 물리적인 거리로 인하여 정서적인 측면 이외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다. 사례 F만 매달 일정정도의 돈을 송금하고, 다른 여성결혼이민자들도 필요한 경우 본국 가족에게 송금을 하면서 본국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면접자들은 대부분 1~3명의 매우 가까운 친구와 가깝게 지내는 몇몇 출신국 친구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알게 되었거나 본국에서부터 알던 사이로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들의 경우에는 친구의 소개나 지원센터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많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 친구들에게 많은 부분을 서로 의지하며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⁵⁾

일주일에 5~6번 정도요.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애기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 일, 설거지, 청소 같은 거 하고 (친구네 집으로)가요. [……] 친구 집 갈 때 면 11시, 12시. [……] 애기 어린이집에서 오니까 5시에는 집에 와요. 베트남음식 해먹고 텔레비보고 집에서 그냥 놀아요...밖에 나갈 때도 있어요. 마트가고, 시내도 가고, 그래요. [……] 센터도 가요. 그래도 둘이서 놀다보면 시간도 지나고 잘 안가요. [……] 가면 좋은데 거기보다는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아요. [……] 센터에도 다른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보다 ‘팔복동 친구’랑 친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게 좋으니까(사례 C, 베트남, 24세).

센터가면 친구들 만나는데, 좋아요. 수업은 그냥 하나까하고, 그거 끝나면 친구네 집에 가요. 7-8명 정도요. 수업 끝나면 바로 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말도

5) 설동훈 외(2005: 119)의 보고서에서 결혼상태별 부부 간의 불화에 대한 상담자나 도움을 준 사람의 항목에서 모국인 친구가 29.3%, 나의 가족 친척이 18.6%, 남편 가족 친척이 10.6% 순으로 나타났다.

잘 안되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놀러가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가서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친구들 만나면 좋아요. 집에서는 베트남 음식 못 먹는데, 친구들과 있으면, 베트남 음식도 만들어 먹고, 남편이야기랑 얘기 이야기랑 하면서 같이 놀러도 가고 하니까. 한국말은 안 써요. 우리들끼리 있는데 베트남 말 써요 (사례 D, 베트남, 25세).

이들은 출신국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고, 고민상담이나 고향 이야기 등을 하면서 편하게 모국어를 사용하고, 고향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 가까운 관계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이 친구들과는 공유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폐쇄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른 면접자들도 같은 출신국이 아니면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알게 되는 제3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포함한 한국인이나 기타의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욕구도 없으며, 출신국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를 더 선호한다. 이 관계는 한국사회 적응을 더디게 하며, 자신들이 한국 내에서 ‘외국인’임을 인지하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사례 B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다른 베트남, 중국에 비해 한국에 같은 출신국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는 지역이 서로 멀어서 한 달에 1~2회 정도 본국인 친구들과 만난다.

같은 나라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더 가깝게 느끼죠, 서로 만나면 좋고 고향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음식도 먹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우리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우리들끼리 노는 게 편하죠. 남편이랑 같이 가도 말이 안통하고 자기 혼자 심심하니까 고향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혼자 가라고 하죠... 서로 바쁘니까 자주 못 만나죠. 자주 보면야 좋은데, 다들 하는 일도 있고, 가정도 있고, 저도 출근하고 하니까 서로 전화를 많이 하죠. 뭐 전화해도 특별히 하는 얘기는 없지만 가끔씩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때도 있구요(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B의 출신국 친구들과의 관계망도 폐쇄적이기는 하지만 만나는 빈도가 적은 만큼 시간적 투자도 적고 완전히 서로에게 의존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도 한다. 사례 A는 전주지역에 중국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수도 많기 때문에 출신국 친구

집단의 범위는 상당히 크다. 출신국 친구집단 내에서도 무척 가깝게 지내는 소수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들과의 접촉 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A는 대학원 진학 공부를 하면서 시청에서 정기적으로 통역과 번역 관련 업무를 하며, 기타 단체에서 비정규적으로 일을 하며, KTF 서포터스라는 프로그램 수강을 받고 있다. 가까운 친구 한 명과는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받으며, 통역과 번역 일을 함께 한다. A와 B는 출신국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면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친구하고는 같이 일을 하니까 거의 매일 보죠. [……] 둘이 있을 때는 중국어로 얘길 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국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주로 한국어를 쓰죠, 둘이서도 거의 한국어를 써요. [……] 같이 일하고 하니까 다른 동료들(한국인)하고 같이 만난다고 봐야겠죠. [……] 같은 일하니까 (동료들도) 같은 처지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일 끝나는 시간도 같으니까 남편 늦게 오면, 같이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쇼핑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 쉬는 날에는 다들 일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그 (출신국) 친구들이 편하니까 불러내서 만나요. 가끔 기회가 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만나긴 하지만 그렇게 가깝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네요(사례 A, 중국, 34세).

4. 한국인 친구 및 직장 동료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출신국 친구가 아닌 한국인 친구집단은 한국사회에 적응 하는데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이다. 사회화 과정의 또래 집단으로 비슷한 나이의 문화와 일상 등을 공유하면서 한국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며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국인 친구들과의 교류와 그들과의 네트워크는 한국사회 적응에 무척 중요하다. 면접자 중에서 한국인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면접자는 2명으로 A와 B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는 학교가 낯설었지만 유학생들이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죠. 학교생활이랑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애들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재밌게 지냈지요. 지금은 졸업한 지 오래되고, 저도 결혼하고, 친구들도 결혼하고, 일하고 하니까 자주 보지는 못하죠. 졸업하고는 학교 행사 때도 가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가진 않고, 경조사 때나 만나고, 잘 못 봐요. 지금은 대

학원 공부를 하니까 대학원 사람들도 있고, 일하고, 통역하고 하면서 아는 사람들은 있죠(사례 A, 중국, 34세).

어학당 다닐 때 친구들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항상 친구들이 옆에 있었어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소개팅도 하고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머리랑 이런 데가 외국인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 그 친구들은 전화통화도 하지만. [……] (한국인) 친구 만나는 게 (사귀는 게) 쉽지 않네요. 지금 현재는 한국인 중에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이들의 친구관계는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비슷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동호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나가지만 한국인이나 여성결혼이민자나 결혼을 한 후에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관계 형성이 어렵다. A와 B는 현재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는 직장이나 대학원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에 소속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다.

직장동료들이요? 그렇죠, 직장동료들도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매일 보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잘 못 볼 것 같지만 지금은 농담도 하고, 서로 도움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서 왔다보니까 관공서나 비자나 이런 법적인 것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알려주고 어디 세일한다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저번에 일하던 데서 여기 소개받은 것도 그렇고 지금도 기간 끝나면 일할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일하는데서 사장님하고 아줌마들하고 알아요. 잘 해줘요. 식당이니까 김치 같은 것도 담그면 나눠주고, 반찬 같은 것도 주고, 걱정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그냥 같이 일만 해요. 밖에서 만난 건 없고, 저도 쉬는 날에는 집안 일 하고 하니까 서로 집에 가는 경우도 없고, 집에 다른 사람 오게 싫어요(사례 E, 중국, 28세).

공장에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계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말 안해요. 쉬는 시간에는 말할 수 있는데 시간이 10분? 15분? 그래서 일 얘기만 하고, 끝나

면 다 집에 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나이 많아서 말도 잘 못하고 어리니까 한국 오니까 힘들지, 베트남에서 뭐 했냐 이런 말하면서 열심히 살으라고 하고, 불편해요. 지금은 일안하니까 없어요(사례C, 베트남, 24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직장은 한국인과 접촉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로 직장동료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그다지 가깝지 않은 것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면접자 중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없었으며, 모두 직장을 여러 번 옮기거나 직장이 없다. 직장동료와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김은미 외(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해서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사람 중 직장동료는 3.6%로 한국인 친구는 14.1%로 나타났다. 한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 외 직장동료는 강한 연결망은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간단한 정보와 도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다.

5.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단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쉽게 타인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 관련 NGOs, 종교단체 등이다. 대부분의 이주민 관련 지원 단체에서는 교육이나 강습, 각종 행사, 인권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자조모임을 형성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출신국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경로도 지원 단체이며, 출신국 친구들 이외에 제3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지원 단체의 직원, 자원 활동가들과 접촉할 수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한 지원 단체는 지원 단체를 매개로 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외에도, 한국어능력이 높은 사람은 통역과 번역을 포함한 자원 활동가로 활동하기도 하며,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맺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지원 단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네트워크의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으로 활용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이다.

센터 가면 친구들도 보고, 모르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나고, 수업도 받고, 뭐 배우

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서 알려줘요. 엄마 오는 거 그런 것도(부모님 초청 서류작업) 도와주고 그런 것들(사례 C, 베트남, 24세).

우리 아이 맡기기도 하고, 병원 갈 때도 도움을 좀 받죠. 수업 같은 거는 잘 안 하고, 가끔씩 행사할 때는 나오죠. 행사하면 중국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노동자들도 오고, 전주 사는 중국 사람들은 많이 오니까 그런 거는 좋지요. 그리고 센터에 친구가 (직원으로) 있으니까 이런저런 거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가끔씩 놀러도 오고 그렇죠(사례 E, 중국, 28세).

또한 지원 단체는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교육 이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각종 행사에서 고유 의상과 음식, 전통 악기 등을 소개하기도 하며, 판매를 하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인들에게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저번에 베트남음식 만들어서 판적 있어요. 많이 팔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날 재료가 없어서 일찍 왔는데, 좋았어요. 다음에도 한다고 그래요. 소장님 (우리가 만든 베트남음식) 인기 많다고 좋아했거든요(사례 D, 베트남, 25세).

이러한 활동들과 여성결혼이민자들에 관련된 다문화가정 지원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의 법률제도에 관한 상담은 이들의 한국 내에서의 법적인 지위와 함께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 단체에서는 단순히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녀와 남편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반적으로 지원단체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다양한 측면으로 도움을 준다. 하지만 지원 단체와의 접촉의 지속성에는 문제가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원 단체에서 주로 행해지는 기초적인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사례 E는 선 이주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중국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편이기도 하고, 현재 일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상당기간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교육과 기타 프로그램 등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

센터는 자주 안와요. 재미없고 지루해요. 한국어 수업 많이 받았어요. 저번 센터

에서도요. 음식이랑 다른 거도 다 해봐서 난 안 해도 되는데 계속해요. 그냥 어떤 때 친구들 보고 싶으면 오는데 많이 안 오니까 센터 사람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요. 행사는 잘 와요. 뭐 하는 게 재밌고 좋아요. (베트남) 음식 만들고, 놀고 하는 거는 좋아요. 일어요. 일하고 싶는데 일 못하니까 일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사례 D, 베트남, 25세).

지원 단체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외에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법률관련 서비스와 같은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지원 단체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진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의 이용률은 낮은 편이며 이용 서비스도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의료 및 보건관련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김은미 외, 2009). 지원 단체의 활용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지원 단체의 지원프로그램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지원 단체를 통한 취업과 일자리 정보들의 획득은 사적인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공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질적인 취업과 고용에 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이는 한국의 이민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이중섭, 2009).

6. 이웃과 한국인과의 관계와 취업

이웃은 도시화와 아파트의 증가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다.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이웃은 거주형태에 따라서 다르다. 면접자들 중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웃집 사람들을 전혀 모른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웃집 사람들의 얼굴만 아는 정도이고 특별한 관계는 없다. 집 근처 슈퍼마켓이나 상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얼굴만 알고 인사정도는 하지만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를 한 적은 없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한국어 능력이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은 알아듣기가 어렵고(사례 E),’ ‘별로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사례 G)’이기도 하다.

한국사람 만나는 거 남편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벽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친해지기 어렵고 그냥 친구들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하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사례 C, 베트남, 24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무관심이다. 이해경(2005)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제결혼 여성들이 한국인 이웃과의 교류 없이 사실상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음을 뜻한다(설동훈 외, 2005). 이웃집단의 개념을 확장하면 일반 한국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웃과의 교류문제가 없는 원인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부라고 할 수 있다. 이웃과 일반 한국인들과의 교류를 거부한다는 것은 한국사회 적응이 부정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더욱이 가정 내에서의 문화적인 정체성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한다. 또한 직장동료와 한국인 친구의 부재의 문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인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여긴다. 한국인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것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국제결혼을 해서 오게 되는 원인으로 한류문화가 자주 지적되며 직업이 없는 경우에 주로 일상에서 텔레비전 시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정의 이미지, 한국인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자신이 외국인임을 확인한다.

드라마 보면 한국 사람들 다 잘 살아요. 사람 많은데도 많이 가고, 집도 넓고, 다 부자예요. 여자들도 운전하고, 옷도 예뻐요. 한국 여자들 많이 예뻐요. 키도 크고, 우리랑 많이 달라요. 저는 눈도 크고……(사례 C, 베트남, 24세).

이러한 시선들은 일반 한국인들의 거리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두 가지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단순한 문화적 거리감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최현(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전적으로 혈통이나 민족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이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종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07)에 따르면 한국인의 63.6%가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단일민족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72.6%)는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79.4%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김은미 외(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사회적 거리감이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비판의 여지가 존재한다. 자국민과 참여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고용영역에 있어서는 다수가 이종차별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이중섭, 2009). 이와 함께 외국인을 결혼을 통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 및 밀접한 사적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할 때보다 훨씬 더 거리를 두는 것을 볼 수 있다(김은미 외, 2009). 또한 선진국과 저개발국, 백인과 유색인, 전문직과 생산직 종사자, 부유층과 빈곤층 등으로 외국인의 겉모습을 근거로 구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 정책이고 정책은 이주자 본인의 의식을 형성한다. 면접자들이 한국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이 외국인임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는 취업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의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다. 면접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다. 다음의 문제는 학력의 문제이다. A와 B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중졸,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일자리 구하는데 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중국인이라고 안 받아요. 학력이나 한국말 하는 거랑은 다른 한국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말이죠. (직장을 구하는데 차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안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중국으로 가서 살려고 해요. 남편도 같이 가죠. 중국에서는 한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니까요. 남편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사례 A, 중국, 34세).

A는 취업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이 커서 한국생활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

각하고 있다. A는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A는 현재 자신의 법적 지위가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 귀화한다고 해서 취업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국적 취득을 고민하고 있으며,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며 남편도 이에 동의해서 중국으로 가서 같이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취업의 문제는 사회적 지위와도 연관된다. “좋은 직업”(descent job)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만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사례 B는 현재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아직은 기간이 남아서 괜찮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을 해야 하잖아요. 남편은 공무원 하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시험도 봐야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공무원은 힘들고, 계속 통역, 번역 같은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다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집도 멀고 가끔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사람을 뽑기도 하니까 이런 단체에서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사례 B, 우크라이나, 29세).

다른 면접자들은 대체로 소규모 공장과 식당에서 일을 한다. 주로 출신국 출신 지인들의 소개로 직장을 구하고 E를 제외하고는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을 한 적이 없다. 사례 F와 사례 G는 의류 관련 소규모 공장에서 일명 ‘시다’로 일을 하는데 자신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으로 접한 일이 소규모 공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체류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에 적응이 잘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도 했다.

핸드폰 대리점 가면 회사 옷 입고 있잖아요. 그게 참 예뻐 보이는데, 아마트에서도요. 그런 일 해보고 싶은데,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생각도 안 했죠. 에이 중국 사람이고 한국말 많이 해야 하는데 저를 쓰겠어요.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게 편해요. 그래도 오래 하다보니까 익숙하고, 설거지만 하니까 사람들 대할 일도 별로 없고, 중국 사람들 이런 일 많이 하니까 언니(같이 일하는 조선족을 말함)도 있고, 여기서 계속 일해야죠(사례 E, 중국, 28세).

노동시장과 관련된 취업분야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히 크다. 일자리의 선택 폭도 넓지 않고, 외국인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들을 볼 수 있다. 이주민의 존재가 자신의 고용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종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국제인권익서론조사에서도 한국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지를 잘 보여주는데 한국은 인종이나 민족의 평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고용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는 상대적 배타성을 보인다(이중섭, 2009).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본국에서의 학력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나타난다.

고용의 문제는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도 배타적이다. 결혼이민자에게는 상당한 시민권적 제약이 따른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거주비자가 방문동거 비자로 전환되는데, 방문동거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에 연고가 없어서 누군가에 의한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도 현행법에서는 그들의 취업을 불허하며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이주자들의 노동 문제는 체류자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04년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귀화요건을 첫째, 한국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한 지 2년이 경과되었거나, 둘째, 한국 배우자와 결혼 후 3년 및 한국거주 1년 중하나만 충족하면 귀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들에게는 취업상담서비스 등의 제반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민은 적용에서 제외되며 직업훈련도 국적 취득 전 이민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이중섭, 2009).

Ⅵ. 나가며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살펴보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일부 수직적인 관계가 나타나며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가족 내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이 외의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드러나진 않지만 사회적 연결망이 한국인들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다. 출신국 가족과 출신국 친구들과의 관계는 무척 가까운 관계로 감정적인 지지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면

에서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관계망이 폐쇄적이며 이 관계망 속에서 ‘외국인’임을 느끼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기타 지원 단체들이다. 지원 단체에서는 한국어나 한국 문화 등에 대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조모임을 지원하기도 하고,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지원단체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나 출신국 친구 등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원 단체는 프로그램과 정책적 다양성의 부족에서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정부기관으로 이민자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곳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육아나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들은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역시 취업이나 고용에 관한 면은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한국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 한국의 이민자 정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드러난다. 특히 취업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외국인’임을 크게 느끼는 영역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대체로 저숙련 노동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언어와 학력, 한국사회 적응이 잘 안되었다는 점 때문에 취업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부 외국출신의 장점을 살려 외국인 지원 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통역, 번역, 언어교사 등의 일자리를 갖고 있기도 하나, 고용의 안정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그 상위 일자리로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인 이주의 맥락에서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가족 간의 관계,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영향력이 드러난다. 연애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게 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다른 여성결혼이민자들과는 달리 가족의 지원이나 한국인들과의 관계에 큰 문제는 없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측면, 특히 취업이라는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은 동일하며, 가장 ‘외국인’임을 느끼는 지점이다.

이주는 점점 가속화되고 차별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정치적 환경과 인구학적 압력, 새로운 자유무역 지역의 생성 등의 이유로 이주는 계속될 것이다(Castles and Miller, 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며 적응하고,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것은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사회통합정책을 이민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고용, 가족, 교육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 되어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임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연·장인자. 2009. “‘엄마되기’: 경험을 중심으로 본 정체성의 문화정치.” 《현대사회와 문화》 28: 73-103.
- 강현. 2012.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연구: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양옥경·이해영. 2009.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_____. 김민정·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24(1): 121-155.
- 박경태. 2004. “한국사회에서 화교들이 느끼는 차별의 수준.”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한국사회학회. pp. 411-415. (2004.6.18.-19. 경북대학교)
- 박신규.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경로와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 구미시 결혼이주 여성의 이주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18(1): 180-213.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5. “이민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 김영기 편, 『한국사회론』. 전북대학교출판부. pp. 3-24.
- _____. 2014.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자아정체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3: 278-312.
- _____. 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해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_____. 2006.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관리학회. pp. 1-20.
- _____. 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_____. 강기정·이병하. 201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양인숙·김선훈.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34(1): 237-266.
- 오경석·김희정·이선옥·박훈순·정진헌·정혜실·양영자·오현선·류성환·김희수·강희복.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pp. 321-349.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한국행정학보》 42(3): 29-49.
- 이중섭. 2009.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한국인구학》 28(1): 73-106.
- 장지혜. 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 만족도.”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경수·김민정·남영호·박동성. 2008. 혼혈에서 다문화로』. 일지사. pp. 131-171.
- 최현. 2007. “한국인의 다문화 시티즌십: 다문화 의식을 중심으로”《시민사회와 NGO》 5(2): 147-227.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_____·설동훈. 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경구·설동훈·이철우·이충훈·이혜경·정기선·한건수. 2012. 『해외 각 국의 이민정책 추진 체계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4 in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Greenwood Press.
- Burt, Ronald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4th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S120.
- Chiswick, Barry R. 1978.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the Earning of Foreign-Born Me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95-120.
- Cornelius, Wayne, Takeyuki Tsuda, Philip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 Entzinger, Han and Renske Biezeveld. 2003. *Benchmarking in Immigration Integration*. European Research Centre on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ERCOMER)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Lareau, Annette. 2003.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박상은 역. 2012. 『불평등한 어린시절: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의 대물림』. 에코리브르).
- Lin, Nan.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ssy, Douglas S.,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nd Adela Pellegrino. 1998. *World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Oxford: Clarendon Press.
- Parreñas, Rhacel Salazar.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문현아 역. 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여이연).
- Piore, Michel J. 1979. *Birds of Passage: Migrant Labor in 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per, Nicola and Mina Roces. (ed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
- Portes, Alejandro. 1988. "Social Capital: Its Origin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_____, and Ruben Rumbaut. 1996.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Paperbacks.
- Samers, Michael. 2009. *Migration*. London: Taylor & Francis. (이영민·박경환·이현욱·이종희 역. 2013. 『이주』. 푸른길).

(2014. 4. 4. 접수; 2014. 4. 30. 수정; 2014. 5. 23. 채택)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Networks and Social Incorporation in Korea: A Qualitative Study

Young-Hyo Seo

Chonbuk National University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adaption and incorporation are important for their children and family and it reflects the immigration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s. This study portraits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networks with her husband, family, friends, work colleagu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s and their awareness, employment and immigrant incorporation policy aspects will be discussed.. Inflow channels make different result for family's support and their social networks. In the case of personally married, they get active family's support and various social networks, but in the case of married by matchmaking agency lack of family support and dependent on her husband. There are positive effects that give emotional supports in network with her parents and family from home country but also it make them awareness of an 'foreigners' with its closed characters. Relationship with Koreans, and in labor markets, that female marriage immigrants cannot get a stable and good job recognize themselves as 'foreigners'. The immigrants labor policies have to change that can cover immigrants' family, labor, education, welfare.

Key words: marriage immigrants, social network, social adjustment, immigrant incorporation policies, identity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 정: 2007년 2월 2일

1차 개정: 2009년 7월 1일

2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3차 개정: 2013년 4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약칭: KIMS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

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분 및 임기)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4인 이내
 - 3. 총무이사 1인
 - 4. 편집이사 3인 이내
 - 5. 연구이사 3인 이내
 - 6. 감사 2인
 - 7.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는 자.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전임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장의 선출과 명예회장의 추대)

- 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차기 회장이 된다. 단, 제1차 투표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제1차 투표의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로 정한다.
- ②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가부투표를 실시하며,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선출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출)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법인의 이사장 및 총회,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 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기타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 ⑥ 감사는 학회의 예산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제4장 조직

제13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의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본 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1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4.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5. 회원에 대한 포상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이사회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실무이사회)

- ①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집행하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선임하는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실무이사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실무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⑤ 실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기획한다.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회원의 회비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실무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실무이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및 연구자문위원회)

-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 ③ 연구이사 및 연구회의 연구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연구회와 연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4. 사업에 따른 수입금
 - 5.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6. 본 학회의 기금
 - 7. 기타 수입
-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실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해산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 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자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 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 ① 《한국이민학》은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 ① 한국이민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훈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imanet2007@gmail.com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

페이지(<http://www.kim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부	가, 부, 부
가, 가, 부분	가, 부분, 근본	가, 근본, 근본	부분, 부, 부
가, 가, 근본	부분, 부분, 부분	가, 근본, 부	근본, 부, 부
가, 가, 부	부분,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	부, 부,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계재가” 또는 “계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계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계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계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계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계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흔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국’(kimanet2007@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 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베테르(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

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1) 도서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증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게재 논문

-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 설동훈·김윤태.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 이해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3) 단행본 수록 논문

-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ル化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 編, 『國際社會學: 國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4-133.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働力移動.” 森田桐郎

編, 『國際勞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54.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4) 번역도서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國ナシヨ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 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까치. pp. 289-314).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최홍엽. 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미간행).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썸마홀, 2006.5.1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봄): 200-223.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ur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이민학》 제2권 제1호의 관례에 따른다.

13.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전화: (063) 270-2917

한국이민학 제5권 제1호

인쇄일: 2014년 6월 30일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이철우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www.kimanet.org

인쇄처: 도서출판 기쁨사

전화: (031) 889-4451

팩스: (031) 889-4452

ISSN 2093-6044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5 No.1 2014

Articles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tion Administration in Switzerland —————

■ Myung-Joon Park

Residential Segregation for Ethic Korean Chinese in Korea:
A Qualitative Case Study after the Expansion and Continuance of Ethnic Enclaves —

■ Hun-Joo Ha, and Seok-Ho Kim

Female Marriage Immigrants' Social Networks and Social Incorporation in Korea:
A Qualitative Study —————

■ Young-Hyo Seo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